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

2016. 6.

해양수산부

Contents

제1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제1절 개요 및 연혁 ····· 1

1. 개요 ····· 1
2. 항만법 연혁 ····· 5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연혁 ····· 16
4.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변천 개관 ····· 18

제2절 관련법령 비교 ····· 20

1. 개요 ····· 20
2. 요령·규정 ····· 20

제2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절차 및 업무

제1절 추진절차 ····· 22

1.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 목표 ····· 22
2. 추진절차 ····· 23

제2절 사업추진 단계별 업무 및 적용 ····· 24

1. 대상사업 선정 및 공고단계 ····· 24
2. 사업시행 허가단계 ····· 27
3. 실시계획 승인단계 ····· 59
4. 공사 시행단계 ····· 66
5. 관리단계 ····· 74

제3절 국가귀속 시설 및 재산관리 요령 ····· 77

1. 총사업비 보전 ····· 77
2. 권리의무 관계 ····· 80

Contents

제3장 주요 쟁점별 질의 회신 사례

제1절 사업비 및 투자비 관련 ····· 82

1. 총사업비 산정 ····· 82
2. 사업비 조정 ····· 94
3. 투자비 보전 ····· 106
4. 무상사용 정산 ····· 114
5. 공사비 검수 ····· 121
6. 기타 ····· 122

제2절 항만시설 관리 · 권한 등 ····· 124

제3절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 139

제4절 기타 ····· 159

제5절 법령해석 ····· 163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항만법령 ····· 163
2. 법령별 해석 ····· 164

제4장 관련 법령 적용 및 판례

제1절 관련 법령 적용 ····· 170

1. 법령 해석 관련 ····· 170
2. 세무·회계 관련 ····· 179

제2절 판례 ····· 184

제 1 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제1절 개요 및 연혁

1. 개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정의

- 비관리청항만공사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로 정의할 수 있음

* 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

항만시설 투자 주체에 따른 구분

- 항만시설공사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음
  - 민간 자본에 의한 개발은 주로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로 시행됨

<항만시설 투자의 분류체계>

구 분		내 용
정부재정사업		o 정부재정의 직접적인 투입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건설되어 적기 시설 확충 곤란
민간자본개발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o 조성 시설 및 토지의 전용성 여부에 따라 귀속 및 비귀속 사업으로 구분 - 귀속사업은 당해 귀속 시설 및 토지를 조성하는 투입되는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 무상 사용 - 비귀속사업은 조성시설 및 토지를 비관리청이 소유할 수 있음 o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사업 추진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귀속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보전이 가능하여 최근에는 투자가 활성화 o 전용성이 강한 시설일 경우 기업의 시설 수요에 따라 적기개발 가능
	민간투자법 (민간투자 사업)	o 정부재정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한계 극복과 민간의 창의·효율적인 경영기법 적용 등을 위해 도입(수익성 사업 : BTO방식 추진) o 민간의 재원을 조달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획(제안)단계에서 준공까지 재정사업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 - 재정사업보다 '사전타당성조사', '사업공고(고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등의 절차수행에 추가 시일 소요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배경 및 개요

-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을 도모
- 초창기에는 소규모 시설이 개발 및 시설 유지보수를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하여 시행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1967년 항만법 제정 때부터 시행되었음
  -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활성화가 제도 시행의 목적
  - 항만시설 실수요자의 신속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여 항만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 비관리청 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이 원칙이나, 일부 시설은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 범위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은 항만법 제2조5호(항만시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이며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임
- 비관리청항만공사 관련 항만법령[1]의 규정은 대상시설, 허가, 승인, 공사, 준공, 귀속 및 비귀속, 총사업비 산정, 사용료 감면 등이 있음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 항만 시설

- 항만시설은 크게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등으로 구분되며 화물의 보관을 위한 야적장 등 항만부지도 항만시설에 포함됨
  - 즉, 항만시설에는 매립시설 등 하부시설과 건물 등 상부시설, 하부시설과 상부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시설, 선박의 이접안,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에 설치된 시설, 해상공유지, 부지와 배후단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시설(항만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 (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기본시설	① 수역시설 :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등 ②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 ③ 임항교통시설 :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④ 계류시설 :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기능시설	① 항행보조시설 : 선박 통항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무통신 관련 시설 ② 하역시설 : 하역장비(고정, 이동),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1)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시설 (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여객이용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④ 화물 유통과 판매시설 :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⑤ 선박보급시설 : 선박용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시설 등 ⑥ 항만의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련된 시설 ⑦ 항만시설용 부지 ⑧「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 내 시설로 한정) 수송시설 :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항행보조시설 :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보급시설 : 급수(給水)·급빙(給冰)·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 유통·판매·보관 시설 및 이런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 하역기계, 제빙(製冰)·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어업용 통신시설 :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수산자원 육성시설 :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⑨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 내 시설로 한정) 복지시설 :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휴게시설 :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⑩ 공해방지시설 :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지원시설	①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②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③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④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항만시설 (법 제2조 제5호)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⑥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⑦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⑧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시설 -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항만 친수시설	①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②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 시설 ③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④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항만 배후단지 (제7호)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②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항만법 연혁

총설

- 항만법은 항만 개발 촉진 및 이용과 관리의 위하여 1967년 신규 제정됨
- 수십차례의 일부 및 전면 개정을 거쳐 현행 항만법(2015년 6월 28일 시행)의 체계를 갖춤
-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 제정시부터 항만개발 제도의 하나로 시행됨

〈항만법 제·개정 중요 연혁항만공사 규정〉

법률번호 (시행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법률 제1941호 (1967. 4. 30) (신규제정)	-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	
법률 제2758호 (1975. 4. 4) (일부개정)		- 항만시설의 범위에 임항지구안에 있는 시설을 포함 - 예선업 허가제 시행 - 화물입항료 징수근거 규정 - 비관리청 항만시설 사용료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률 제2874호 (1976. 1. 31) (일부개정)		- 지정항만에 대한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함.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시설물중 국가 비귀속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 중 국가 귀속 시설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료 징수 규정 - 톤세법 폐지 및 선박입항료제도를 신설 -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임항지구를 지정 또는 세분할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

법률번호 (시행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법률 제4358호 (1991. 6. 9) (전부개정)	- 여객 및 화물운송의 급증에 따른 항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시행 -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등	- 해운항만청 및 지방해운항만청에 항만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해운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항만시설의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를 허가한 때에는 도시계획법·수도법·하수도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자기의 비용으로 항만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정 - 수역·외곽·계류시설등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설계·시공하도록 함 - 국유재산인 항만구역안에서 항만시설의 비관리청이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4925호 (1995. 7. 6) (일부개정)	-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시설의 사용 관련제도를 개선·보완 - 예선제도 개편 - 항만운영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신속·간편한 민원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	-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의제 규정 - 항만시설의 관리청으로부터 시설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과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항만시설의 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의 번잡한 허가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항만시설의

법률번호 (시행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선업 : 허가제→등록제 - 예선사용료 인가제→ 신고제 - 일정규모이상의 항만내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예선운영협의회 설치·운영 - 항만운영전산망 구성·운영 - 비귀속 항만공사의 유지보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법률 제5807호 (1999. 8. 6) (일부개정)	- 항만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항만시설에 화물의 보관·판매시설 등을 추가함 - 민간부문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건설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통관 완료 화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예선업등록의 결격제도, 예선약관의 인가제도 등을 폐지
법률 제6254호 (2000. 7. 29) (일부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하역장비 등의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민간부문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시 공사비용 예치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 민간부문 항만공사 시행시공사비 예치제도 폐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 하역장비 등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 - 항만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 제조·사용하는 자는 항만관리청이 시행하는 제조검사·정기검사 실시

법률번호 (시행일)	제 · 개정이유	주요내용
		- 하역장비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 항만시설사용료를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를 일괄 대납의 경우 그 사업자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대납업무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
법률 제6394호 (2001. 7. 30) (일부개정)	- 예선사용료 신고제도 폐지 -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활용도제고	
법률 제6487호 (2001. 11. 25) (일부개정)	-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	- 항만시설의 정의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정의조항을 신설함 - 종합여객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항만공사로 설치 가능 -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 고시 등의 절차, 항만배후단지내의 행위제한, 비용보조 · 시설지원등 관련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부담금제도와 관련된 조항 삭제 -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일부개정)	- 어려운 법률 용어를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 중심의 법	

법률번호 (시행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 제8628호 (2008. 2. 4) (일부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으로 결정 -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 마련 -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보안 등의 업무로 명확화 - 항만협회 설립	
법률 제9773호 (2009. 12. 10) (전부개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 -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 의제 경우 추가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도를 도입	
법률 제11371호 (2012. 8. 23) (일부개정)	-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 -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물류처리 기능을 위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와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편	

법률번호 (시행일)	제 · 개정이유	주요내용
법률 제11594호 (2013. 6. 19) (일부개정)	-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 변경 · 승인 · 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해상구역"→"수상구역"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추가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 변경 · 승인 · 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항만공사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의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인 · 허가 등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2545호 (2014. 9. 25) (일부개정)	-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	-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 제2종 항만시설에 대해 동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중 어느 하

법률번호 (시행일)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 원형지 개발방식·환지에 의한 개발방식·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 -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법률 제13274호 (2015. 6. 28) (일부개정)	-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 -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	- 항만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법」,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

법률번호 (시행일)	제 · 개정이유	주요내용
	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	업을 영위하는 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 ·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의 설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항만배후단지 또는 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의 처벌 수준을 유사한 법률과 균형 맞추어 정비

〈항만법령상의 비관리청항만공사 규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2조(정의)5호: 항만시설	제1조의2(2종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법제2조제5호마목, 제7호 각 목 외 및 나목	제2조(항만지원시설):법제2조제5호다목(7)	대상시설의 범위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제1항~제6항	제10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법제9조제2항(제1항, 제3항)	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영제10조제1항(제1항~제3항), 법제9조제3항제3호(제4항)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요건(기본요건, 평가고려, 공고대상사업기준, 고시사항 등)
	제10조의2(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법9제조제3항4호	제5조(공고대상 항만공사 등):법제9조제4항(제1항), 법제9조제5항(제4항)	
	제11조(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법9조4항	제6조(항만공사의 고시): 법9조6항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제1항~제5항	제12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법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과 승인시 요건, 공고, 승인 신청 연장 등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법제10조제2항	제7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영제13조제1항	
	제14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법제10조제4항(제1항 제,2항)		
	제15조(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 또는 신고기한의 연장):법제10조제5항 단서		
제11조(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제8조(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법제11조단서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제2항~제5항	제15조의2(준공 공고)	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법제12조	준공확인 및 준공보고서 제출, 준공전 사용신고,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등
	제16조(준공확인):법제12조제3항	제10조(준공전사용의신고):법제12조제5항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제17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등)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법제15조제1항 단서(제1항, 제2항)	제11조(귀속대상외 전용항만시설):영제18조제1항제3호	귀속 및 비귀속 항만시설과 토지, 무상사용 및 사용료 산정, 무상사용권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법제15조제4항	제12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영제19조제1항6호)	
	제20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법1제5조제4항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무상사용권과 관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항만시설관리권의 준용사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의 성질)			항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제19조(권리의 변경)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제2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26조(항만시설의 사용)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면제, 사용료 종류와 요율, 징수기간 등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법제30조제4항(제1항)	제15조(사용료 대납경비):법제30조제4항	
	제28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용율):법제30조제6항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법제15조제5항	제29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제20조제2항		
제66조(비용부담 원칙):제2항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비관리청 부담
제67조(비용의 보조 등):제1항	제73조(비용의 보조 등):법제67조제1항		비관리청이 1종 배후단지 개발 시 비용보조 및 융자 가능
	제74조(전기서설 등의 설치):제1항		
제6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비용)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는 공공단체나 사인이 부담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제1항(1,2호), 제2항, 제3항			허가·지정 또는 승인취소 사항
제73조(보고 및 검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내용 검사
제75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위해 출입, 사용 등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인한 피해시 정당한 보상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고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산업입지법, 공유수면법 등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권리의무 이전시 인가, 이전 조건
제90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89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1조(권한의위임)		지자체의 권한
	제92조(업무의위탁)		
제9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허가시 수수료 징수
제94조(조세감면)			항만공사 장려를 위해 조세감면 가능
제96조(벌칙):1호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3천이하)
제97조(벌칙):1~5호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이하)
제98조(벌칙):1호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천이하)
제99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비관리청 항만공사 소유권

- 항만법으로 시행되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이 원칙이나, 일부 시설은 비귀속(전용시설 등)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연혁

총설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

>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 이라한다)’ 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1967년 항만법 제정 때부터 시행되어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제도적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활성화가 제도시행의 목적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재정 및 민간투자의 한계로 적기 시설확충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관리청 제도를 통한 항만시설 확충 필요
  - 또한 항만 부문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항만관리방안 도입과 궁극적으로 항만 부문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대 가능
  - 한편, 1997년 민촉법의 제정과 1998년 민간투자법으로 전면적 전환, PA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와 함께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후에도 2014년 6월 항만법 시행규칙 조문 중 ‘비관리청 관련 조항’ 개정, 2015년 8월 업무처리요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 발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연혁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4단계(태동기-정착기-활성화기-성숙기)로 분류함
  - 제1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태동기(1967. ~ 1990.)
  - 제2기 : 제도 정착기(1991. ~ 1995.)
  - 제3기 : 제도 활성화기(1996. ~ 2007.)
  - 제4기 : 제도의 성숙 발전단계(2008. ~ 현재)

- 태동기 :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목표로 국가 주도하에 항만개발 사업 추진 시기
  - ①제도의 도입→②비관리청의 사용료면제 및 타인 사용료 징수기간 도입→③국가 비귀속 대상시설규정 및 무상사용제도 도입→④국가귀속시설 재산가액의 투자비 인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함
  - 정부의 국가시설관리 원칙과, 공공성 유지를 기조로 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함
  - 1975년 항만법 개정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항만공사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제도와 타인 사용료 징수기간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도입
- 정착기 : ⅰ) 총사업비 산정기준 규정 및 항만시설관리권의 도입 , ⅱ) 비관리청의 투자비 조기보전 방안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 제도가 구비됨
  - 항만시설관리권 도입 및 총사업비 산정기준 규정제도
    - 항만시설관리권 설정(물권, 민법 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 적용)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공사비용 예치제도 도입,
    - 총사업비 :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로 산정
    -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는 시설무상사용, 타인사용료 징수를 통해 보전(20년 범위내로 한정)
    - 공사 중의 항만시설은 공정이 50/100 이상인 경우 권리의무의 이전 가능
    - 국가 비귀속 대상시설 명시(하역장비와 화물의 이송시설 및 배송시설, 싸이로 및 저유시설 등)
  - 비관리청 투자비 조기보전 방안 확대 및 절차간소화
- 활성화기 : 적극적인 민간투자 정책에 맞추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유인을 강화
  - 조성토지의 국가귀속 범위 명시 및 투자비 전액 보전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예측가능성과 항만시설관리권의 활용도 제고
  - 외국인투자촉진, 조세감면 등 투자수요 저변 확충
- 성숙·발전기 : 사업경쟁유도 및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총사업비산정 혼란 완화 등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
  - 준공 시 총 사업비 산정 : 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통일

4.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변천 개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단계별 연혁 개관

구분	태동기 ('67~'90)	정착기 ('91~'95)	활성화기 ('96~'07)	성숙발전기 ('08~현재)
정책 방향	•민간투자유도 및 공공성 기조 유지	•투자비 조기보전과 권리확대(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비보전방법체계화(총사업비 산정기준 구체적 명시)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자 저변확대 •제도 체계화 및 절차간소화 추진	•사업경쟁유도 및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신재생사업 유치(평가시 5점 가점 가능)('13)
투자비 보전 범위	•귀속시설 재산가액 산정방법 변화(의제주의⇒실질주의)(20년만 사용료 보전->산정투자비 인정) •귀속/비귀속 대상 시설구분	•비귀속대상시설 구체화(하역장비, 이송 및 배송시설, SILO, 저유시설등)	•비귀속시설추가(계근시설, 헛간 등)(국가소유 SILO증축은 귀속),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취급관련시설 등)	•비귀속시설추가(하역장비 Rail시설, 그러나 기초파일은 비귀속:군산항) •공기연장시에도 건설이자 지급가능
투자비 보전 방법	•사용료면제를 통한 사업비 정산 •사용료면제기간 폐지(당초 '75년엔 20년->'79년 폐지) •사후정산(준공후 비용정산서 제출)	•타항 항만시설면제 범위 확대(20년 이내 면제가능) •총사업비산정기준 도입(사업비증액 제한목적)	•사용료면제시기 조정(총사업비에 달할 때) •총사업비항목변경(공사이윤 및 사업이윤보장)	•총사업비산정기준 개선(조사설계비 및 공사비 : 도급계약액으로 개선) •공사비증액사유제한(예외적 증액) •총사업비에서 이윤 제외
사업자 권리 의무	•사업자의 권리의무 이전은 관리청의 사전허가 후 가능 •국가귀속시설 무상사용시 사용자책임으로 시설유지관리	•권리의무이전조건 완화 - 공정률 50/100이상인 경우 권리의무이전가능 •항만시설관리권 도입 - 사업자권리확대 - 물권으로 간주하고 민법상 부동	•권리의무이전조건 완화 및 완화확대 - 공정률 30/100 이상으로 완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정률과 무관하게 인정 •항만시설관리권 활용기회 제고 - 항만시설관리권	•권리이전시 공정율 조항 유지(법87조, 규칙31조) •저당권설정 항만시설관리원 이전은 저당권자 동의 필요(처분조건 강화) •비귀속시설을 조성한 비관리청의 자

구분	태동기 ('67~'90)	정착기 ('91~'95)	활성화기 ('96~'07)	성숙발전기 ('08~현재)
		산규정 준용	처분제약사항 폐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당해 시설 사용허용(민간투자활성화)
사업 이행 담보 방안		•사업추진확실성 담보(공사비용 예치제, 공사시행허가일로 부터 6개월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시행확실성 담보제도 완화 및 투자유치(예치금제 폐지) •공사 적기 추진 유도(사업사귀책사유로 지연시 사업비비보전, 법정기한내 착공 및 강제준공)	•사업허가취소조건 삭제(일정기간 내 승인 또는 공사 미시행시 취소조항 삭제)
행정 서비스	•엄격한 허가주의에 의한 시행허가(유지보수사업 별도 허가)	•비관리청항만시설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허가-〉신고)	•준공검사절차 간소화(전문감리회사 전면책임감리대상 사업(100억이상)은 감리조서/준공확인서로 검사갈음) •절차간소화 및 사업편의 제공(허가와 승인 동시신청시 승인내용 고시생략)	•전자문서로 사업시해허가신청시 수수료 20%감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허가를 득한 경우 최소가능(행정처분)

제2절 관련법령 비교

1. 개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관련 법령

-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항만법, 항만공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등임
- 적용 법령에 따라 투자시설, 시행허가권자, 사업비 보전, 사업비 보전기간, 총사업비 범위, 시설의 귀속여부를 항만법에 규정한 비관리청항만공사와 동일 또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2. 요령 · 규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하 ‘업무처리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동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업무처리 요령은 법·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
  - 대상사업 선정단계 :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정신청, 대상사업검토 및 공고
  - 사업시행 허가단계 : 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 실시계획 승인단계 : 실시계획 승인신청 또는 신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검토 및 승인
  - 공사 시행단계 : 사업관리시행, 공사착수신고, 공사지도관리, 준공확인 신청, 준공검토 및 확인, 총사업비 산정
  - 관리단계 : 귀속시설의 등기, 투자비보전 적용 배제 검토, 무상사용 신고, 무상사용 허가, 항만관리청 조치, 허가대장 비치, 보고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목적
  -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항만법」 제3조제1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항만법」 제30조, 영 제26조~제28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료 징수 신고(제6조)
  -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법 제30조제8항)
- 비관리청의 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제15조)
- 연도별 사용료의 정산(제16조)

제 2 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절차 및 업무

제1절 추진절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 목표

추진목표

- 비관리청항만공사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1967년 항만법 제정 때부터 시행되었음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의 정책주안점이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고 있음

-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 이후 시행되어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의 한계로 적기 시설확충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관리청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해양수산부 공표자료, 2010. 11.)
  -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족 해소와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음
  - 또한 항만 부문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항만관리방안 도입과 궁극적으로 항만 부문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 한편,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의 제정과 1999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으로 전면적 전환, PA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 이후에도 2008년 2월항만법 및 시행령 개정, 2012년 12월 항만법 개정, 2013년 6월 시행령 개정, 2014년 4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가 진행됨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초점	경쟁체제 유지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권리이전조건 완화 사용료면제범위 확대 (타 항만 시설사용료 면제)	➡	대상사업 사전공고 경쟁유도 절차적 투명성 강화

2. 추진절차

개요

-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음
  - 타당성 검토(관리청) → 공고 대상사업 지정 신청(관리청) → 대상사업 공고(해양수산부)→ 허가신청(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사업자 선정(관리청) → 시행허가(관리청) → 실시계획승인신청(사업자) → 실시계획승인(관리청) → 착공 → 준공신고 → 준공확인신청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 총사업비 산정

제도 시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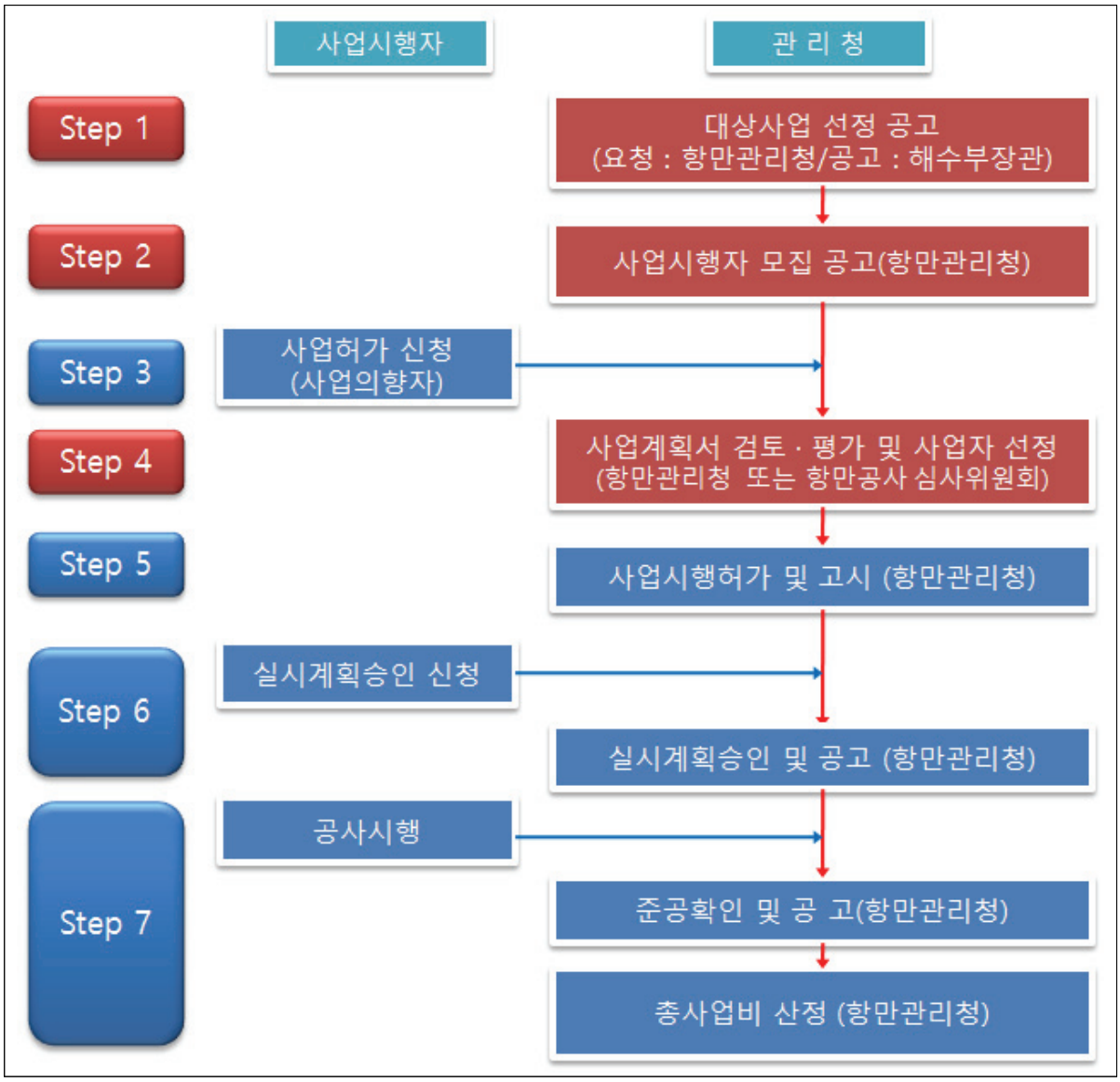

비관리청 시행 Flow-Chart

제2절 사업추진 단계별 업무 및 적용

1. 대상사업 선정 및 공고단계

1) 업무추진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대상사업 검토 · 선정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상사업 지정요청	
대상사업검토 및 공고		

2) 세부 추진 절차

대상사업 검토 · 선정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영 제11조, 규칙 제5조, 요령 제4조

- 항만관리청이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공사 중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검토·선정
-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 · 개축공사,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공사(다만,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 영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

*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공사를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

타당성 조사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5조

- 타당성 조사는 요령 제5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 조사 시행
  -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
    - ·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참고하여 각 항만관리청에서 작성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귀속/비귀속 여부, 재원조달방안, 귀속 시 사업비 보전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야 함
- 타당성 조사 예산 : 해당 지방청 또는 시·도에서 확보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지정요청서 제출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영 제11조, 규칙 제5조 및 요령 제4조

- 공고대상사업 선정 :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
- 공고대상사업의 지정요청서를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요령 제4조)
  - 요령의 별지 1호 서식 활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작성
    1. 사업계획
    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3. 항만시설 운영계획
    4. 귀속 및 비귀속 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
    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 대상사업 검토 및 공고

(1) 추진 주체 : 해양수산부

(2) 적용 법령 : 항만법 제9조제4항, 규칙 제5조제1항

- 제출된 공고대상사업 지정요청서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사업을 결정하여 1월 말까지 공고
-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가능(규칙 제5조제1항)

2. 사업시행 허가단계

1) 업무추진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시행허가의 통지	

2) 세부 추진 절차

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규칙 제5조제2항, 요령 제4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 :대상사업으로 공고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함(규칙 제5조제2항, 요령 제4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행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통지 및 시행허가 조치 실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 (예시)

1. 대상사업

1) 공 사 명 : ○○항 ○○○○○○○ 사업

2) 공사목적 :

3) 공사장소 :

4) 공사규모 :

5) 공사기간 :

6) 예상 총사업비 : ○○○백만원(부가세 별도)

2. 제출서류

1)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3)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4)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첨부)

5)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6) 투자비 보전계획서

7)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종류

-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항만공사의 성격에 따라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비공고대상 항만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등으로 구분되며 요령에 규정된 각각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추진됨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9조 제4항, 영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 대상 : 귀속시설

(4) 서식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항만공사의 성격에 따라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비공고대상 항만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등으로 구분되며 요령에 규정된 각각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추진됨
- 대상시설
  -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공사
  -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
-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 첨부
  -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 ·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및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
    - * 외부 감사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비공고대상 항만공사)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9조 제2항, 영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 대상 : 귀속/비귀속시설

(4) 서식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
  -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9조 제2항, 영 제10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3) 대상 : 귀속시설

(4) 서식 :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신청** :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평면도)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신청(규칙 제4조제1항)

□ 허가 관련 특례 조항

-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일괄 승인 신청** : 다음의 경우(귀속, 비귀속 모두 적용)에는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영 제13조제4항)
  - 관련 법령 : 법 제9조 제2항, 영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4항
  - 대상 시설
    - · 야적장의 포장(鋪裝)
    - · 창고·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 · 선가대(船架臺)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 ·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함)
    - · 지원시설(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함)의 설치
    - · 상기 규정 공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시행허가 후 신고 대상 항만공사** : 다음의 비귀속 항만공사는 항만공사실시계획의 허가 후 신고하여야 하는 항만공사임(영 제14조)
  - 관련 법령 : 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단서, 영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대상 시설 : 국가비귀속 과 영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에서 "계류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을 제외한 시설
    - · 하역시설, 무게 측정시설
    - ·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위판장 시설
    - · 항행보조시설, 선박보급시설 등
    - · 공해방지 시설 일부
    - · 지원시설
    - · 항만친수시설 일부
    - · 전용목적이 강하여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시설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불필요 대상 공사** : 비귀속 항만시설을 유지보수공사는 허가 불필요
  - 관련법령 :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영 제18조 제1항

사업수행능력 평가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항만법 제9조제5항, 규칙 제5조제4항, 요령 제6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규칙 제5조제6항, 요령 제7조)
  - 위원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 : 항만물류과장
    *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가 임명
  - 위원장 포함 8인이상으로 구성, 재무·회계, 항만시설 운영 및 공사의 전문가로 구성
    *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법 제9조제5항, 규칙 제5조제4항, 요령 제6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재원조달능력 : 30점
    · 사업계획 : 25점
    · 참여자의 구성 : 20점
    · 총사업비의 적정성 : 25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요령의 별표 참조
  - 해당 항만 운영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항목 내에서 배점을 조절할 수 있음. 단, 배점조정은 각 호의 배점의 10%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위한 공고(①단계)시 공개하여야 함
-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요령 제8조)
  -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미리 항만관리청이 정한 세부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려 놓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함
  - 사업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때는 요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함
  - 추가 공고 시행에도 사업참여자에 대한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허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 취소로 봄

□ 사업 유형별 평가 예시

(1) 접안시설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부심사기준
합 계	100	○ 세부항목별 5단계로 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 - 탁월 :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재원조달능력	30	
1) 신용도	10	
- 자기자본비율	5	
- 유동비율	5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	
- 총사업비 조달계획	10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나. 사업계획	25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	5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7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8	
다. 참여자의 적정성	20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	10	
- 참여자의 사업실적	5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	5	
라. 총사업비의 적정성	25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비 집행계획	10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평가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Ⅰ. 재원조달능력(30점)

1. 신용도(10점)

○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비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합산

가. 자기자본 비율(5점)

비 율	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비 율	150%이상	150%미만~130%이상	130%미만~110%이상	110%미만~90%이상	90%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 자금조달계획성의 적정성(2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0점)

○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0점)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의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대비

비 율	총사업비 초과	총사업비 8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6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4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2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i)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ii)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iii)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의 투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II. 사업계획(2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시공계획 수립여부를 평가
*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계획(지내력, 야적장 확보계획 등) 및 ○○사업 적기지원을 위한 건설계획 등을 중점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나. 시공·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 시공·운영 기간 중 야기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2. 운영계획의 적정성(15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7점)

○ 해상풍력 지원 부두 운영계획, 해상풍력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해상풍력 기자재 취급계획, 서남해 풍력단지 지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증빙자료 제시시 평가에 우선 고려**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나.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8점)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등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군산청 관할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 투자비 보전기간(무상 사용기간) 등을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III.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운영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 평가
* 단독 참여에 최고점을 부여, 컨소시엄은 5개사로 제한(**단, 실수요자 참여는 선.화주 및 하역사로 한정**)

구 분	단독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 최근 5년내 전국항만내 준공한 항만시설공사 시행 또는 투자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투자비율에 따른 실적을 합산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항만청 또는 항만공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구 분	350억원 이상	350억원미만 ~25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15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 최근 3년간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TOC 부두 운영에 참여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항만시설 사용실적은 지방항만청 또는 항만공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구 분	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 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Ⅵ. 총사업비의 적정성(25점)

1. 산출근거의 타당성(10점)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5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1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정성을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5점)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Ⅴ. 가점(+5점)

○ 사업별 조건 부과

(2) 신재생 에너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심사기준
구분	합 계	103	○ 정량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50점)
정량평가	가. 재원조달능력	25	○ 정성 평가(50점) 기준
	1) 재무구조 및 경영평가	15	- 탁월 :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회사채	5	
	- 기업어음	5	
	- 기업신용평가	5	
	2)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 우수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나. 사업수행실적 및 연간임대료 평가	25	
	1)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 사업수행 건수	5	- 양호 :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사업수행 설치용량	5	
	2) 참여인력 보유 및 자격현황	5	
	- 기사기술사 등 보유현황	5	
	3) 연간임대료	10	- 보통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연간 임대료 산정액	10	
정성평가	다. 사업계획	50	
	- 사업 및 구조안전성 검토 계획	5	
	- 주차장 태양광 시설 설치방법	15	- 미흡 :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원상회복 및 보험가입 계획	10	
	- 공사 방법 등 공사계획	10	
	- 태양광 시설 및 창고지붕 운영계획	10	
	라. 가점	3	* 가점은 공고일 현재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평가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Ⅰ. 재원조달능력(25점)

1. 재무구조 및 경영평가(15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신용평가등급	회 사 채	AA-이상	AA-미만 A0이상	A0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	5	4	3	2	1
	기업어음	A1이상	A1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점 수	5	4	3	2	1
	기업신용평가	AA-이상	AA-미만 A0이상	A0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	5	4	3	2	1
배점 총계		15	12	9	6	3

* 회사채나 기업어음이 없는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가 없는 경우 7.5점 부여

2. 자금조달의 확실성(10점)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의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비 율	총사업비 초과	총사업비 8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6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4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2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배 점	10	8	6	4	2

i)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ii)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iii)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의 투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II. 사업수행 실적 및 연간임대료 평가(25점)

1.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소 시공 수행실적을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로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 조달청,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자료 또는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적을 확인한 자료만 인정(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

가. 사업수행 건수(○○사업 국내실적)(5점)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	4	3	2	1

나. 사업수행 수행용량(○○이상 국내실적)(5점)

5MW이상	5MW미만~ 4MW이상	4MW미만~ 3MW이상	3MW미만~ 2MW이상	2MW미만
5	4	3	2	1

2. 참여 기술인력 보유 및 자격현황(5점)

○ 신청업체의 참여 기술인력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전기분야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참여 기술 인력만 인정하며 동일인이 복수 자격을 가질 경우 중복 인정은 하지 않음

자격사항	기 준	배점	비고
기술사	1인 이상	2.5점	
기 사	3인 이상	2.5점	
	2인 이상 3인 미만	1.5점	
	1인 이상 2인 미만	0.5점	

3. 연간 임대료 산정(10점)

○ 설비용량 1MW당 연간 임대료
 * 주차장 태양광 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한함

3,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	8	6	4	2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 신청업체에 대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정성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비고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사업 및 구조안전성 검토 계획 - 사업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 - 구조안전성 검토계획 등	5	4	3	2	1	
○ 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방법 - 공사 계획 (인근 나무와 관련한 공사방법,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방법 등) - 주차장 이전에 대비한 공사방법	15	12	9	6	3	
○ 원상회복 및 보험가입 계획 - 원상회복 계획 및 금액의 타당성 등 - 창고·화물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계획방법 및 산출내역 등 적정성	10	8	6	4	2	
○ 공사방법 등 공사계획 - 창고 지붕누수에 대비한 대책 - 태양광 시설 설치 방법 등	10	8	6	4	2	
○ 태양광 시설 및 창고지붕 운영계획 - 운영시 지붕 누수 등 대응방안 -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 방안 등	10	8	6	4	2	

(3) 건축물(사무실 등)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내역 및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배점
1. 재원조달능력(4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2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	20
	자기자본조달의 확실성	20	자기자본조달 확실성 및 자금차입계획	20
2.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목적의 타당성	8
			경영방침 및 장래성 등	7
	공정계획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15	공정계획(공사기간, 적용기술, 공사규모 등)의 합리성 및 우수성	8
			시공자 선정계획의 우수성	7
3. 참여자의 적정성(30)	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20	해운항만관련 사업수행 여부	10
			비건설사(항만이용자,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	10
	참여업체의 사업경험 및 실적	10	항만시설공사 시행실적	10

□ 세부심사기준

1. 재원조달능력(40점)

가.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20점)

○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총사업비

자기자본비율	100%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사별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배점 후 합산함.

나. 자기자본조달 확실성 및 자금차입계획(20점)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각호를 적용하되

- 자기자본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 20점
- 자기자본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예금잔고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 : 18점
- 자기자본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금잔고증명서 및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16점(예금잔고가 금융기관 대출약정서의 금액보다 초과한 경우)
- 자기자본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14점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0점

※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사별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배점 후 합산함.

2.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15점)

○ 사업수행목적의 타당성(8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8점	7.5점	7점	6.5점	6점	

○ 경영방침 및 장래성 등(7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7점	6.5점	6점	5.5점	5점	

나. 공정계획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15점)

○ 공정계획(공사기간, 적용기술, 공사규모 등)의 합리성 및 우수성(8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8점	7.5점	7점	6.5점	6점	

○ 시공자 선정계획의 우수성(7점)

구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배점	7점	6.5점	6점	5.5점	5점	

3. 참여자의 적정성(30점)

가. 참여자 구성의 적정성(20점)

○ 해운항만관련 사업수행 여부(10점)

- 공고일 기준 참여업체가 해운항만관련 사업체로 등록된 경우 : 10점
- 공고일 기준 참여업체가 해운항만관련 사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비등록업체 당 1점씩 감점

○ 비건설사(항만이용자, 재무적투자자)의 출자비중(10점)

출자비중	100%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미만	비고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총 투자비중 비건설사가 투자하는 비율의 정도 평가

나. 참여업체의 사업경험 및 실적(10점)

○ 항만시설공사 시행실적(10점)

투자실적	100%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40%미만	비고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최근 5년 이내 전국 항만에서의 항만시설 투자비 실적

(4) 항만시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재원조달능력	**30**	
1. 신용도	10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0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Ⅱ.사업계획	**25**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시설, 해당항만 및 동일 지방청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참여비율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5**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및 비용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비 집행계획	10	시공자 선정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Ⅰ. 재원조달능력(30점)

1. 신용도(10점)

□ 자기자본비율 (5점)

비 율	60%이상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30%미만	비 고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 공동참여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유동비율 (5점)

비 율	100%이상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70%미만	비 고
점 수	5	4	3	2	1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2.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20점)

□ 총사업비 조달계획 (10점)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 고
점 수	10	8	6	4	2	공정단계별 자금 확보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점)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평가)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

구분	총사업비 초과	총사업비 8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6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4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 2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점수	10	8	6	4	2

※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의 타당성(2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 고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공법, 공기 등 시설 사업계획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선박입출항, 환경 등 민원발생시 대책

2. 운영계획의 적정성(15점)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 고
해당항만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5점)	5	4	3	2	1	화물유치계획 및 항만시설 사용계획
투자비보전방안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해당시설, 당해항만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점)

비 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70%미만	60%이상 70%미만	50%미만	비 고
점 수	10	8	6	4	2	실수요자(운영사,화주,선사) 참여비율

2. 항만 운영 및 사용 실적(10점)

□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구 분	5회이상	4회	3회	2회	1회	비 고
점 수	5	4	3	2	1	'○○-'○○년도 항만시설공사시행 및 부두운영실적

※ 부두운영실적의 경우 1년 단위로 1회 산정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구 분	10억이상	9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9억미만	7억이상 8억미만	7억미만	비 고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실수요자로 '06-'08년 항만시설 사용실적

※ 부두임대료 포함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25점)

1. 산출근거의 타당성(10점)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 고
점 수	10	8	6	4	2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의 산출근거 및 비용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5)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사업비 집행 계획(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비 집행 적정성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공사비 등 절감방안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예시)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재원조달능력	30	
1. 신용도	10	
- 자기자본 비율	5	$\frac{\text{자본비율}(\frac{\text{자본총계}}{\text{자산총계}})}{\text{업종평균}}$ 100%이상 : 5 100%~90% : 4 90%~80% : 3 80%~70% : 2 70%~60% : 1 60%이하 : 0
- 유동비율	5	$\frac{\text{유동비율}(\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text{업종평균}}$ 100%이상 : 5 100%~90% : 4 90%~80% : 3 80%~70% : 2 70%~60% : 1 60%이하 : 0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0	$\frac{\text{재무제표중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의 80\%}}{\text{총사업비}}$ 1이상 : 10 1미만 0.9이상 : 8 0.9미만 0.8이상 : 6 0.8미만 0.7이상 : 4 0.7미만 0.6이상 : 2 0.6미만 : 0 * 1미만 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대체 가능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frac{\text{자기자본}}{\text{총사업비}}$ 40%이상 : 10 40%~35% : 8 35%~30% : 6 30%~25% : 4 25%~20% : 2 20%이하 : 0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Ⅱ.사업계획	25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정성평가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정성평가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정성평가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정성평가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frac{\text{실수요자 항만이용량}}{\text{전체 항만이용량}}$ 50%이상 : 10 50%~45% : 8 45%~40% : 6 40%~35% : 4 35%~30% : 2 30%이하 : 0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관련 사업실적(횟수), 총사업비, 실제참여 사업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로 구간을 정하여 공고함 관련 자료 제시하여 정량적 평가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제 항만 사용 물동량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구간을 정하여 공고함 관련 자료 제시하여 정량적 평가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5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정성평가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비 집행계획	10	$\frac{\text{공개경쟁 도입비용}}{\text{총사업비}}$ 100%이상 : 10 100%~90% : 8 90%~80% : 6 80%~70% : 4 70%~60% : 2 60%이하 : 0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frac{\text{사업비 절감액}}{\text{총사업비}}$ 8%이상 : 10 8%~6% : 8 6%~4% : 6 4%~2% : 4 2%~0% : 2 0% : 0

- **자금조달계획의 평가**(영 제10조제4항, 요령 제9조)
  -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본총계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함
  - 평가액(자기자본평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함
  - 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신사업 평가

- 특수한 사업 평가를 위하여 '요령'의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요령 제6조제2항)
  - 신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에서 발생이 가능하므로 사업 형태에 따라 각 분야의 배점 기준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평가 필요
    - ·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구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각 세부 항목에서 ±10점 범위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규칙 제5조제2항, 요령 제4조

- **항만공사 시행허가 전 검토사항**(요령 제10조)
  -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 항만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
  -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
  -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
  - 법 제8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
  -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 여부

시행허가의 통지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9조제2항,

- **시행허가의 통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허가 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한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함(요령 제11조)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항만명
  -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공사의 개요
  - 공사기간
  -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 **허가조건 부여** :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 부여가능
  -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 ·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 자금계획(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 ·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 법 제85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 법 제15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법 제9조제6항, 규칙 제6조)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함)
  - 2. 항만명
  -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4. 공사의 개요
  - 5. 공사기간
  -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서(예시)

1. 허가사항

1) 피허가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2) 공 사 명 : ○○항 ○○○○○○○ 사업
3) 공사목적 :
4) 공사장소 :
5) 공사규모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7) 총사업비 : ○○○백만원(부가세 별도)

2. 허가조건

1) 일반조건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면허, 인가 또는 검사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설계서 포함)를 구비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우리 청(실시계획 승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피허가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정의된 기술자문 대상사업의 경우 조건 포함)

(4) 본 공사 시행 시에는 **공사착수 후 ○일 이내에 우리 청에 신고**하여 감리, 안전관리 등 시공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우리청(우리시·도)으로부터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거나 피허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또는 철회), 허가조건의 변경,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에 배상요구 할 수 없습니다.**

(6) 본 공사와 관련하여 **국유 또는 타인의 시설**이나 인명에 피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전담 해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기름이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사항 이외에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특수조건(세부허가조건 및 귀속 여부 등)

3) 이의 신청

(1) 상기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본 허가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주요 사항 처리 방안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검토 및 유의사항

- 항만운영 및 개발계획과 대비검토
  - 항만운영 및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항만운영효율이 제고되는 사항과 저해되는 사항
  - 공사 종료 후 시설의 귀속대상시설 및 귀속대상이외의 시설내역
- 항만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의 저촉여부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 투자비 보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 신청자 경합 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의 요목별 의견
- 요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내용이 허가조건에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항만이용자 검토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항만이용자에 대한 사업 참여도 평가
  - 참여자의 적정성 평가시 실수요자의 참여도를 평가

재원조달 계획

-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조달계획과 자금조달의 확실성을 평가
  - 세부 조건 제시시 신용도(신용등급), 재무능력(출자자 구성, 출자액, 재무상태), 재원조달계획(자기자본, 타인자본, 예비재원조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

허가요건

- 허가시 요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허가조건으로 부여
  -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시설활용과 항만시설의 투기화, 사적이익 추구방지
  - 비귀속 시설을 목적 외 사용 및 처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과 위반시 처벌 관련 사항을 허가요건에 포함하여 허가

3. 실시계획 승인단계

1) 업무추진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검토	
	실시계획 승인 및 공고	

2) 세부 추진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신고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10조제5항, 요령 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 시행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신고(법 제10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영 제12조제5항)
    - · 항만건설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
    - · 앞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실시계획 승인시 제출 서류**(영 제13조 제1항)
  -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함)
- 상기 서류 외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자문 후 자문결과가 반영된 승인신청서 제출(요령 제15조)

*** 기술자문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술자문대상 여부(관리청)

2) 각 소속 별 기술자문 실시

①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항건설사무소 : 부산청, 마산청, 포항청, 울산청, 동해청
- 인천청 계획조사과 : 인천청, 평택청, 대산청, 군산청, 목포청, 여수청,

② 각 시·도

- 각 시·도별 기술자문위원회

● **실시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영 제14조 제1항)

- 신고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함)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13조~제19조

- **제출 내용 검토** :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함(요령 제13조)
  - 요령 제10조제5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내용 이행 사항
  - 요령 제11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이행 여부
  - 요령 제14조에 따른 공사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요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 요령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공사설계도서 작성자 적정성 확인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여부(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건설사업관리(감리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와 관련된 사항)

-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영 제13조제3항, 요령16조)
  - 대상사업
    - · 귀속시설인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신설 및 개축 항만공사
    - ·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비귀속 항만공사 중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항만공사
  -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항만관리청은 공사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함

- **승인 조건의 부여**(요령 제17조제2항)
  -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법 제10조제2항)
  - 항만공사 시행(법 제11조)
  -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법 제85조)
  - 항만공사의 준공(법 제12조)
  - 항만관리청의 감독(법 제71조 및 제 72조)
  - 공고시 제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 사항(규칙 제5조제3항)
  -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이행 사항(법 제20조)
  -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

- **허가와 승인 동시처리**(영 제13조제4항, 요령 제18조)
  - 비관리청이 사업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허가업무부서에서 일괄하여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행할 수 있음
    - ·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

실시계획 심사요청에 대한 회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10조제5항, 규칙 제5조제3항, 요령 제19조

- **승인신청 서류의 반려**(요령 제19조)
  - 승인신청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음
    - ·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요령 제10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공사설계도서를 요령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요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술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 ·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시계획승인신청요청의 회신
  -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청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비관리청에 회신함
  - 승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 신청인
    - · 신청내용
    - · 결정내용(승인, 반려)
    - · 반려사유
    - · 승인조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서(예시)

1. 승인사항

1) 신 청 인 :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2) 신청내용
- 공 사 명 : ○○항 ○○○○○○○○ 사업
- 공사목적 :
- 공사장소 :
- 공사규모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 총사업비 : ○○○백만원(부가세 별도)

2. 결정내용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신청한 ○○항 ○○○○○○○○ 사업에 대하여 승인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승인 조건을 확보/미확보 하다고 판단되어 승인/반려 합니다.

(1) 반려의 경우 반려 사유 명기

3. 승인조건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영 제12조제1항, 제2항)
  - 다음의 내용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사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함
    - ·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 공사의 목적
    - ·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문서번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예시)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1. 공사의 명칭 :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기업명 대표 ○○○
   (나) 주 소 :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항
   (나) 공사의 종류 : ○○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나) 공사개요
   ○ 위 치 :
   ○ 사 업 비 : 총공사비 ○○○천원
   ○ 공사내용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비관리청 승인부서(○○○과), 사업시행자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 공사 시행단계

1) 업무추진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사업관리 시행	사업관리 시행
		공사착수신고
	공사지도관리	
	공사의 변경	
		준공확인 신청
	준공검토 및 확인	
	총사업비 산정	

2) 세부 추진 절차

건설사업관리 시행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영 제55조 및 별표7)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항만 건설공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
  - 국가귀속사업은 항만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결정 및 통보, 비관리청은 공사착수전 계약(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제4항)
  - 비귀속사업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자체 선정·수행하며 관리청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 체결확인

공사착수신고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11조, 요령 제21조

-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11조)
-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요령 제21조)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규칙 제8조, 요령 제22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사유(규칙 제8조)
  -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
    - · 그 밖에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지도관리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23조

- 허가·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공사의 변경

- 공사의 변경은 변경신청(비관리청)→승인 및 허가사항 변경검토(항만관리청)→승인 및 허가 변경의 절차로 수행됨
  - 별지 제2호 서식

□ 실시계획 변경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10조제2항, 요령 제17조제3항, 제4항

- 비관리청은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0조제2항)
- 승인 내용의 변경시 공사비 증액(요령 제17조제4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음
    - ·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 ·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 변경하는 경우
    - ·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 변경을 수반한 실시계획 승인 검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17조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선행하여 변경(요령 제17조제3항)
  -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준공확인신청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항만법 제12조제2항, 규칙 제9조, 요령 제24조

- 항만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 후 지체 없이 항만공사준공보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준공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규칙 제9조)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문만 해당(법 제15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

준공검토 및 확인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항만법 제12조제3항, 영 제16조, 요령 제24조

-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함(법 제12조제3항)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영 제16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 준설공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
  -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준공확인 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요령 제24조)
  -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 · 부지 등의 명세서
-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9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였는지를 확인
  -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
-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 시행
- 준공일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
- 준공확인 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함

총사업비 산정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영 제19조, 요령 제25조

-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요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 · 확인하도록 함(요령 제25조)
  - 단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 · 확인하도록 함
-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총사업비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함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영 제19조제1항제1호~제5호)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
  - 건설이자 :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
  - 하자보수보험증권 수수료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항만관리청은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비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3) 주요 사항 처리 방안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 전 사용(규칙 제10조)

(1) 적용 법령 : 법 제12조제5항, 요령 제25조

- 공사시행외의 목적으로 준공확인전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 전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2조제5항 단서)
-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 사용신고서 기재 내용(별지 제)8호 서식 내용

총사업비의 범위

(1) 적용 법령 : 영 제19조

- 귀속시설의 무상사용(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
- 조사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
- 설계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함
-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함)에 따라 계산함
- 보상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등의 매입비 포함)·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부대비 : 건설사업관리비, 물가상승액,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등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 부대비 규정(영19조1항5호라목) 중 「법령에 따른 사업이행조건에 드는 비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함
- 건설이자 :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
  - 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
  -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함
- 부가가치세 : 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조사비부터 제5호의 부대비까지의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불포함

투자비보전 적용 배제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27조, 제28조

-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요령 제27조)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과 기존 수역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로 조성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함
- 해운대리점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요령 제28조)
  -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음

5. 관리단계

1) 공사시행 업무추진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귀속시설의 등기	
		무상사용 신고
	무상사용 허가	
	항만관리청 조차	
	허가대장 비치	
	보고	

2) 세부 추진 절차

귀속시설의 등기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2조제5호, 요령 제26호

- 귀속시설의 등기(법 제2조제5호, 요령 제26호)
  -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 첨부)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기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무상사용 신고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15조제4항, 영 제20조

- 무상사용 기간 : 항만 사용료가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 사용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
- 사용료(영 제20조제2항 제1호~제3호)
  -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 해당항만시설의 **준공당시 항만시설 사용료**
  - 법 제31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자*가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용

* 사용료 면제자(영 제27조제1항제7호)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귀속시설의 타인사용에 대한 항만관리청 조치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29조, 제30조

-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요령 제29조)
-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요령 제30조)

항만공사 시행허가대장 비치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31조

-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대장 작성하고 비치하여 공사시행사항·귀속사항·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유지 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공사 시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유지 하여야 함

보고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요령 제32조

- 항만관리청은 허가·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3절 국가귀속 시설 및 재산관리 요령

1. 총사업비 보전

1) 총사업비 보전 업무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항만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정산	

2) 세부 추진 절차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법 제30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 ①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 ②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영 제26조제1항~제3항)
  -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사용목적
  -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규모
  - 사용기간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

항만시설 사용허가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30조제3호

-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3호)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30조제4호, 시행령 제27조

-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30조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영 제27조제1호)
  -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함(영 제27조제2호)

사용료 정산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30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30조제4항)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비관리청이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함(규정 제15조)
  ①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에 신청
  ②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

③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함

④ 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함

·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연도별 정산내역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함

2. 권리의무 관계

1) 권리의무 이전 업무 흐름도

해양수산부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권리·의무이전
	협의	
	인가(승인)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제출

2) 세부 추진 절차

권리 · 의무 이전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법 제87조,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상속으로 권리 ·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됨
-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다만, 권리 · 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권리 · 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제출

(1) 추진 주체 : 비관리청

(2) 적용 법령 :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게 제출

권리 · 의무 이전 협의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항만관리청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함

권리 · 의무 이전 인가

(1) 추진 주체 : 항만관리청

(2) 적용 법령 :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권리의무 이전 인가 요청에 따른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결과를 통보

제 3 장 주요 쟁점별 질의 회신 사례

제1절 사업비 및 투자비 관련

1. 총사업비 산정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9-21
OOO		
○ 물가변동분을 총사업비 범주에 포함함에 있어서 관련조항("총사업비의 범위"개정전: 18조, 개정후 23조)의 항만법시행령 개정(2008년 2월4일)일자에 따라 총사업비중 물가변동포함, 불포함 여부에 대한 다음의 쟁점이 발생하였음 – 갑 : 2008년 2월4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전은 총사업비 범주에 물가변동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2월4일 이전 물가변동분은 인정할 수 없음 – 을 : 2008년 2월4일 시행령 개정이후 발표된 조항이라고 부대비의 개념속에 물가변동분이 추후 인정된것이 아니라 내용이 보강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용가능함 ○ 항만법시행령 개정(2008.2.4) 이전에 시행된 항만공사의 경우 물가상승액의 적용시점에 대한 문의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09-09-23
○ 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오던 것을 2008.2.4.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 물가상승율의 적용시점은 개정된 항만법시행령 시행일(2008.2.4) 이전에 계약을 통해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실제 물가변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 및 검토비용 부담

질 의 요 지	-	2010-06-28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뢰 결과를 공사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 항만관리청에 제출토록 한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타당성 및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과 검토비용 부담주체에 누군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6-29
○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시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 발주 설계도서로서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점은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 검토 후 검토내용을 승인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비용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신 후 해당 항만공사의 부대비로 총사업비에 포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3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대상 항만공사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

질 의 요 지	-	2010-07-05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에 대하여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7-07

○ 우리부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을 공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공고대상사업을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개정(2009. 12. 14), 이를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의 공사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종 비용항목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중 제3호의 공사비(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에서는 공사비에 대하여 '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공사
2.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2014.07, 기획재정부)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공사비(정보화사업은 " 구축비' '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 부대경비'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설계도서 작성업체 및 총사업비 정산

질 의 요 지	-	2010-07-05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에 대하여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7-07

○ 우리부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을 공고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공고대상사업을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개정(2009. 12. 14), 이를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의 공사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종 비용항목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중 제3호의 공사비(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에서는 공사비에 대하여 '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8.2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제14조(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

질 의 요 지	-	2011-07-01
OOO(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시 부대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 1항 5호 라] 항목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공식/준공식 행사비용[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주요 내빈 참석행사] - 국가(항만청)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 토지 분양 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회 신 내 용	-	2011-07-04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총사업비 중 부대비는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비,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물가상승액,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조사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하신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조건 등을 종합 검토·판단할 수 있는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4.04.)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인정범위

질 의 요 지	-	2011-08-16
OOO(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시의 금액인지, 아니면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 또한 총사업비 중 공사비의 인정이 도급금액인 경우 상기의 4가지에 대한 금액이 공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여부

가. 공사 수행시 낮은 계약금액으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함에 따라공사비 보전금액 발생도급금액 = 계약금액 + 보전금액

나. 공사 수행시 실시계획 변경상황 및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변경이 발생
도급금액 = 계약금액 + 공종변경 및 수량변경금액

다. 공사 수행시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보상비 발생
도급금액 = 계약금액 + 민원보상비

라. 실시계획 승인시는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비관리청의 사정으로 1,2차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도급금액 = 1차 계약금액 + 2차 계약금액

회 신 내 용	공문번호	날짜

1. 질문1.에 대한 검토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에 의거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는 도급계약서(도급계약금액)를 기준으로 산정
단, 도급계약금액은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실시계획변경승인금액을 기준(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와 도급자 간 도급계약금액은 총사업비 산정 시 불인정)
2. 질문2.에 대한 검토

가. 낮은 계약금액(해당공정별 단가낙찰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책정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당초 도급계약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줄 경우 동 증액분이 총사업비(공사비)로 인정받을 수있는 경우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도급계약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나,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종의 설치수량 증·감(발주자의 요구사항에 한함) 및 신규비목 단가(협의단가 적용등)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도급자 간의 합의를 통한 공사비 증액분은 실시계획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검토대상이 아님
단, 총사업비 미 반영을 전제로 실시계획변경은 가능(도급자가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정받더라도 실시계획변경은 선행되어야 함)

나. 당해공사 공종변경(신규비목 추가 등) 및 수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실시계획변경이 가능함(실시계획변경 이후 동증액분을 도급계약내역에 반영)

다.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민원보상비는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비 항목으로도 인정하기 곤란함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보상비 인정 대상은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로 한정

회 신 내 용	공문번호	날짜

라. 1,2차로 분리 계약한 사업내용의 합이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한 실시계획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으나 전체 사업내용이 각각의 계약 사업내용 합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함이 타당

※ 만약 실시계획승인상의 전체공사 사업내용보다 분리 계약한 각각의 사업내용의 합이 더 클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공사비)로 불인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4.04.)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 조사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4.04.)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의 조성비용을 설계비 반영 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	2012-01-04
OOO(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을 신규조성하여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실제 시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인과관계에 있는 기중기선단 회항비의 절감분과 상계하여 공사비 증감없이 시행함에 구두 승인 후 공정보고를 통해 관리청에 보고하였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기중기선 회항비만 삭감하고 실제 시공한 신규 케이슨 제작장은 행정과실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없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사업비를 인정받게 됨. 신규 조성한 케이슨 제작장 조성비용을 설계에 반영이 안되는지		

회 신 내 용	-	2012-01-04
공사중 발생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산정은 「항만법 시행령」제19조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 제25조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전 최종 실시계획(변경)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여건이 「항만법」 제10조제2항과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케이슨제작장 변경시행 상황 및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업무처리요령」제23조에 따라 직접 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검토 ·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2011.8.19.)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국가귀속사업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4531	2013-06-03
경상남도(항만물류과)		
비관리청항만공사 국가 귀속사업의 공사비 인정범위		

회 신 내 용	-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사비는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3. 공사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설이자 산정방법

질 의 요 지	-	-
OOO(인천 중구 운서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에 대한 건설이자 산정 방법		

회 신 내 용	민자계획과-327	2006-03-31.
가.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건설이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도급자가 동일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제출 증빙서류)을 기준으로 하되, 각 공사대금 지급 이후의 시점부터 건설이자가 산정되어야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시행 2005.12.01)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시행 2005.12.09)**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5.26., 1995.12.29., 1998.2.24., 2005.12.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32조 제2항** 항만관리청은 허가·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건설이자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	-
OOO(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와 관련하여 건설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178	2012-09-10
만법시행령 제1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설이자의 산정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에 대한 건설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2.08.23)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민자사업 건설분담금 환수관련 이자계산방식

질 의 요 지	항만공사과-2024	2012-08-22
OOO항만청 항만공사과장		
민자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 정산결과 0,000백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어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고자 하는 바, 협약에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과 이자율 적용방법(고정금리/변동금리)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213	2012-09-19
이자의 계산에 있어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 또는 이자율의 적용방법(고정금리/변동금리)은 일반적으로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사항이나, 동 건과 같이 실시협약에 이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일반 적용례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가.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에 대하여 통상적인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 관계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복리'라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시행령(영 제5조 및 제9조)에서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함에 있어 단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민법, 상법 등 에서 정한 법정이자도 단리임에 비추어 볼 때 동 건 이자의 계산방식은 단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이자율 적용방법(고정금리/변동금리)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서 이자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54조에서는 연 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과 같이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법정이율 적용방식(고정금리)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2012.09.02.)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2. 사업비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총사업비)

질 의 요 지	-	2008-07-14
OOO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위 고시(제2008-124호) 개정전이라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시 개정전 제26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4항에 따라 2007년말 사업비 정산 이후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인지?		

회 신 내 용	-	2008-07-15
○ 삭제된 조항은 2004. 8. 4. 제정당시 비관리청이 매년 투입한 사업비를 파악고자 마련한 조항으로 상위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이 업무처리요령(훈령)에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볼 때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규제정비 대상조문으로 삭제된 조항임 ○ 따라서 물가변동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써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업무 처리요령 중 제26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물가변동 금액 조정방법

질 의 요 지	-	-
OOO(인천 서구 원창동)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공사비에 대한 물가 조정율 산출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민자계획과-326	2006-03-31.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있어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바, 나. 귀하가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지수조정율 적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다. 다만,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점이 '05.9.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전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물가변동 조정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라. 계약당사자와의 계약 시점 및 계약 내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부분)을 확인후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율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물가변동율 조정방식을 포함한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인 · 허가권자)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09.0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초과 차액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범위 배제여부

질 의 요 지	-	-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자(이하 "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목적물로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8조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시행령 제23조의 총사업비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을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범위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
1.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허가를 배제하여야 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비귀속 토지(비관리청이 소유하는 토지)는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따라서, 총사업비 범위 초과의 토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검토과정에서 조성예정 토지의 가액 및 총사업비 추정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토지 조성을 허가해야 함 나. 을설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가능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의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항만시설 및 토지 조성을 관리청이 아닌 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따라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여부는 비관리청이 조성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가 항만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사항이며, 조성되는 토지와 감정평가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시행허가가 가능함. - 다만, 항만법에 의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토지 중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고,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있을 경우(국가에 귀속됨)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 의견 : "을"설이 타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행위는 항만의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제3항 항만법 제18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항 항만법 시행령 제22조(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 및 토지) 제2항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액 반영의 범위 여부

질 의 요 지	-	2009-07-29
OOO		
○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공법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요인 발생시 증액의 규모가 허가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증액가능한지 아니면 총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증액가능한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09-07-30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4항에서 항만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요청이나 관계법령의 제개정,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발생, 기타 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사업시행자의 귀책여부,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비 증액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5. 기타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가변동기준으로 인한 계약금액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8-13
OOO		
○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맞추어 산정하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09-08-14
○ 물가상승액의 적용은 「항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기준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준용하여 물가상승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보정 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	2009-11-02
OOO		
○ 물가변동산출에있어 사업시행자가 직접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물가변동을 산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물가변동 산출방법이 있는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인 공사착공시에 실시계획 승인내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세부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작성하면 되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지협력과	2009-11-03
○ 물가상승액은 「항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제25조(총사업비의 산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적용 관련

질 의 요 지	-	2010-07-28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적용 관련 질의
- 제1안 : 시공사(계약상대자)가 민자사업자(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날(접수된 날)
- 제2안 : 시공사의 물가변동 신청을 받아 민자사업자(계약담당자)가 검토한 후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날(접수된 날)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8-02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하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을 조정일로 인정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준설토 집적 · 상차비 적용(설계변경)여부

질 의 요 지	-	2010-12-10
OOO(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계약형태 :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수의계약임.

1. 준설공사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임시 야적장에 집적하여 준설토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를 탈 수 후 재 상차하여 준설토 투기장에 운반토록 되어 있음.
2. 일위대가상에는 집적 상차비를 구분하여 반영되어 있고, 도급내역서상에는 준설토 운반비가 일식(전체운반비:원)으로 되어, 건설사에서는 야적장에 집적 상차작업을 안하 더라도 일위대가표에 있는 집적 상차비 공제는 건설사와 무관하며 도급내역서에 집적 상차비가 명기되어 있을 시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의견임.
3. 일위대가표에만 있고 도급내역서에는 구분이 안되었더라도, 실제하지 않은 작업공정 집적,상차단가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때 집적 · 상차비관련하여 설계변경 시 삭제가 가능한지, 삭제 가능시 공사 낙찰율을 적용해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0-12-13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관련 준설토 운반 · 처리에 대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이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설계서' 와 '공사계약문서' 및 허가 · 승인조건 등을 토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파악 · 검토하여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
정보고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조정대상여부

질 의 요 지	-	2011-08-19
OOO(강원 강릉시 송정동)		
조달청 가격기준일인 2010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하였으며 비관리청인 발주처가 물가변동 금액을 인정하여 변경 계약시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변경계약 금액이 총사업비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1-08-25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설계 적정여부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시 가격기준일을 기준일로 물가상승액을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 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64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물가상승액은 질의하신 조달청 검토기준일이 아닌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입찰 또는 수의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과내 의견수렴>

1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1.6.9

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1.6.9

의견) 30억원 이상 국가 귀속 사업은 통상

① 국토부 대상사업 공고 ② 항만관리청 허가를 위한 공고

③ 항만관리청 사업시행자 선정 ④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

⑤ 조달청 단가심사 ⑥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⑦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자 선정 ⑧ 계약체결

⑨ 공사착수(도급계약서 제출)

이상의 절차로 사업이 시행되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실시계획 승인전 ③~④) 설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현행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계약의 체결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현행 실시계획과 일치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2011.6.9을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및 지수조정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 신 내 용	-	2011-08-25
<과내 의견수렴> 2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0.2.26 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2.26(조달청 선심 가격기준일) 3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0.5.4 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5.4(실시계획 승인일) 4안) 물가변동 경과기준일 : 2011.6.9 지수조정 산정기준일 : 2010.2.26. ※과내 시설직 5명 의견수렴 결과 모두 1안에 동의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8.19.)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S(물가상승)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유무

질 의 요 지	-	2012-04-30
OOO(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 개요
- 민간건설공사(비관리청 항만공사)
- 2008. 2 도급계약 체결
- 공사기간 : 2008.3 ~ 2012. 5(최초:2011. 2, 변경:2012. 5)
-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기간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 15개월 연장됨
-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에 ES조정 변경 없음
- 금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2012. 9월까지 4개월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사로 부터 공기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지체상금을 당사에 부과하겠다고 함.
- 2008년도말 관련 승인기관으로 부터 ES 조정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상태이나, 시행사에서는 계약조건을 앞세워 ES 조정금액 변경이 안된다고 함.

2. 상기 개요의 내용으로 당사에서 ES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3. ES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하여금 받을수 있는지
4. 기타 사항
- 여기서 말하는 시행사는 민간기업임.
  (국가기관으로 부터 비관리청실시계획 승인을 받음)
-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 되었을 때에는 공기연장을 해주고, 자연적인 실정보고 사항으로 공기연장 신청을 했을때는 공기연장이 안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니 이렇게 당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질의드림.
- 당초 36개월 공사기간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현재 51개월로 증가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ES적용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로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공기증가로 인한 그 어떠한 금전적인(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 비용을 반영 받지 못하였음.

회 신 내 용	-	2012-05-01

1.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시공사간 계약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ES(물가상승)적용 가능여부와 ② ES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2.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 오던 것을 2008. 1. 31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현행 제19조)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계약을 통하여 측량,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 상승액을 인정" 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회 신 내 용	-	2012-05-01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를 요건으로 함.

3. 동 사업의 ① ES적용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2008년도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가 물가변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한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2012.04.15.)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3. 투자비 보전

접안능력 증대 공사비 투자비 보전 질의

질 의 요 지	공문번호	2006-06-12
OOO발전(주)		
선박대형화 추세 및 수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소유 계류시설(돌핀)에 대한 접안능력 증대공사 및 법정항로에 대한 준설을 시행할 경우 국가 귀속 및 투자비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민자계획과-721	2006-07-14
선박대형화 추세 등에 따라 국가 소유 계류시설에 대한 접안능력 증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귀속 및 투자비 보전이 가능함. 선박대형화 등에 따른 항로준설도 항만기능의 향상, 입항 계획중인 선박의 규모 및 빈도 등의 측면에서 항로준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법」제 1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국가 귀속 및 투자비 보전이 가능함 다만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세부적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방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하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항(2005.12.01)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항만법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3항(2005.12.01)** ③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17조(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 (2006.07.01)**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질 의 요 지	항무과-1058	2006-10-27
OOO해양수산청(항무과장)		
한국동서발전(주)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당진화력발전소 수역시설 유지준설공사와 관련한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회 신 내 용	민자계획과-	-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및 사업 준공시 해당 항만시설에 투자비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준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토록 협의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허가 내용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의 사용과 관련한 유지보수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지준설 투자비 보전

질 의 요 지	제2008-01호	2008-08-20
OOO시멘트(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7조에 의하면 국가에 비 귀속되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에 대한 투자비보전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공용부두의 유지준설은 투자비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그러나 동해항 북부두 21, 22번 선석은 공용부두로써, 낙하 퇴적물로 인한 오염의 귀책사유가 동양시멘트(주)에게 없으므로 공용부두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준설사업) 시행의 경우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질의		

회 신 내 용	-	2008-08-20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부두의 접안수역에 대한 준설공사는 국가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보전 대상에 해당됨. 다만, 공용부두의 접안수역이라 하더라도 퇴적물(오염원인)에 대한 원인 행위자의 귀책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투자비 보전여부를 해당 관리청에서 적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7조(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시행 2008.05.07)

투자비 보전관련

질 의 요 지	–	2010-06-23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으로 공고된 사업(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호, 준설공사)의 투자비 보전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6-24
○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 중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서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광양항 OO부두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국가 귀속대상 사업으로 투자비 보전대상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1조(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금융이자) 보전

질 의 요 지	항만마케팅팀-1159	2011-05-04
OOO공단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준공 및 총사업비 확정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으로 투자비를 보전 받는 경우 확정된 총사업비에 금융이자를 가산하여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502	2011-05-09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설치된 항만시설이「항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후 비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당시설 무상사용, 타인사용료 징수 및 다른 항만시설 무상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총사업비는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 건설이자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사업비의 산출후 추가로 금융이자를 포함토록 하는 규정 및 사례는 없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0.12.01.)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0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항만공사 투자비 상계(보전)여부

질 의 요 지	-	2011-09-05
OOO(서울 송파구 거여2동)		
본 과업대상구역은 광양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양항 항계선내에 있는 국가 귀속시설인 접안시설 전면의 수역시설(박지 및 선회장) 증심준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으로 인해 질의함. 본 과업구역은 국가귀속시설인 접안시설 전면에 대한 증심준설로 2009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이었으나 관계기관 및 도선사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당초대상구역축소로 준설량(499.2만㎥→279만㎥) 및 개략공사비(322.5억원→175.2억원)으로 변경되었음. 그 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함.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항만법의 실시계획은 의제 처리된다고 함(산업입지정책과 문의). 따라서, 이때 국가귀속시설의 수역시설 증심준설에 대한 투자비에 대하여 상계(보전)를 받고자 할 경우 1. 산입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 승인조건에 의해 투자비상계가 가능한지 2. 아니면, 꼭 항만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만 투자비에 대한 상계를 받을 수 있는 지 요약) 기존 비관리청 항만공사대상으로 투자비상계대상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사업지역의 규모변경으로 인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입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이때 항만법의 실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로 의제처리된다고 함, 이때 승인조건에 의한 투자비 상계가 가능한지, 아님 항만법에 의해서만 투자비 상계가 되는 지의 여부		

회 신 내 용	공문번호	2011-09-05
질의하신 항만시설은 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시설로「항만법」에 따라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호)했던 사업으로 당시의 여건이 동일하다면 관계기관 협의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를 통하여 투자비 보전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2011. 8. 19. '여수광양항만공사' 의 출범과 함께 해당지역의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이 동 항만공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는 관련 계류시설과 광양항 입·출항료 및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의 상계를 통한 투자비 보전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전합의 없이는 곤란한 실정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시행 2011.08.0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여부

질 의 요 지	-	2012-01-30
OOO(인천 남동구 간석동)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1. 조사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고명시되어 있으므로, 질의1: 당해현장 토공작업 착수전 인접현장의 침하 균열등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비관리청이 시행한 지질조사비용은 당해공사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설계비: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의2: 당해공사 수행도중 설계변경을(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법으로 공법변경)위해 비관리청이 시행한 구조검토비 및 설계변경을 위한 외주용역비는 설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대비 중 다목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등을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질의3: 당해현장 공사도중 인접현장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영향 조사를 목적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계측비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은 피해영향 조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2-01-31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는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중 ① 착공전 인접현장의 안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건설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단계별 이행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② 설계변경은 발생사유와 실정보고 내용 및 항만관리청의 조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③ 공사중 구조물 손상발생에 따른 발생비용은 귀책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의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이자 직접 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만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2.01.26.)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1.11.25.)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	-
OOO(OOO해운(주),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00000 해운 등 7개사에 권리의무를 이전함에 따라 양수 7개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해당금액을 투자비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세청의 경정 통지에 따라 양수 7개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되었다면 투자비 보전내용도 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918	2012-07-11
항만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투자비에 대한 보전은 실제로 이를 부담한 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위 양수 7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사정이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금액만큼의 투자비를 계속 보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실제로 부담하게 된 자가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2.04.15.)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2.06.29.)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제20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항만공사(PA) 관할구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	2012-09-25
OOO(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투자한 사업비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할하는 여수 ·광양항에서도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228	2012-09-25
항만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그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만시설 외에 다른 항만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08.2.4.부터는 다른 항만시설이 항만공사(PA)의 관할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항만공사법 개정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항만공사법 시행 이후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 자로서 공사(PA)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PA)의 관할시설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제4항 및 제5항(시행2012.8.23.) 항만법 시행령 (시행2012.8.23.) 제27조 제1항(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4. 무상사용 정산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인가 신청

질 의 요 지	-	2010-12-27
OOO(전남 여수시 신월동)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취득한 항만시설(야적장)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과 관련하여, 민사확정판결 (화해조서)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서 (별지25호서식) 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으나 양도인(피고)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여 양수인(원고)의 서명 날인만 있을 경우 양수인 단독으로 권리, 의무 이전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만일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0-12-29
1. 질의하신 항만시설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총 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로 파악됨. 이와 같은 권리 일부분의 이전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총사업비와 항만시설의 범위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서명 · 날인한 신청서[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건 관련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결정' 판결만으로는 양수인 단독의 권리 · 의무 이전은 곤란하며, 양도인(피고)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를 확정한 후 항만시설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0.12.01) **제87조(권리 · 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항만공사 무상사용 및 사용허가 질의

질 의 요 지	-	2011-12-15
OOO(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 완료 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신고시 신고필증 교부 여부와 별도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법적근거		

회 신 내 용	-	2011-12-22
질의하신 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조건의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설치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후 비관리청이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무상사용 및 타인사용료 징수와 다른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한 금액이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이와 관련 해당시설의 본인사용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신고 후 사용(신고필증교부 없음) 할 수 있고, 해당시설의 타인사용료 징수시는 「항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항만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시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미리 사업시행청에 신청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1.08.19.)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1.08.19.) 제20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가 비귀속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서 임대 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	2014-05-26
-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181	2014-05-26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2013.6.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항(2013.6.19)**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제1항 제3호(2013.6.19)**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항만시설 무상사용 정산

질 의 요 지	-	2012-12-20
OOO(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실시협약서(부지대부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의 내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2-12-26
항만법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소관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하께서 말씀하시는 "실시협약서(부지대부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내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료 신고내용, 실시협약(부지대부계약) 등 인·허가 행정기관인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2.08.23) **제31조(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관리청항만공사 보전투자비 무상사용 여부

질 의 요 지	-	2012-11-30
OOO(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에서 발생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보전투자비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무상으로 사용 여부		

회 신 내 용	-	2012-11-30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항만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에서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단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제4항(2012.8.23.)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2012.8.23.) 제20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2012.8.23.) 제27조 1항(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2012.8.23.) 항만공사법 제4조(법인격 등)(2012.09.02)

비응항 조선소 설치허가

질 의 요 지	1AA-1407-072590	2014-07-12
OOO		
○ 비응항에 FRP 선박 수리조선소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소 유리섬유 분진이 주민들과 상가 등에 날아와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조선소 영업 개시 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 줄 것.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609	2014-07-17
○ 비응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중 하나인 "군산항"에서 일부 구역을 "비응어항구"로 고시한 구역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허가한 『조선소 선가대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는 "수리조선소" 사업허가가 아니라, 수리조선 운영에 필요한 "선가대와 운영건물"을 「항만법」의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동 선가대가 설치되는 곳은 1AA-1406-105715의 민원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군산 비응항 개발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시 이미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되어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그 곳에 선가대를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로 보여짐. ○ 수리조선소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등에 대한 방진 대책 요구에 대해 군산청에서 2014년 7월14일 방진벽, 집수정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하였음을 알리고, 추가 시설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서해조선(주)] 또는 군산청에 문의하기 바람.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사용

질 의 요 지	-	
OOO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항만법」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갑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해석

- 본건 방파제에 필요한 항만법상 인·허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본건 산업단지 인허가에 의하여 의제된 것임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의 국가귀속, 총 사업비 보전 조항(항만법 제25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법 제15조에 의한 국가귀속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귀속은 인·허가를 처분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함으로 투자비 보전 또한 산업입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2. 을설 : 본건 방파제의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모두 항만법에 따른다는 해석

- 인·허가 의제는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의 적용여부는 인·허가 의제와는 별개로 검토하여야 함
-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항만법 상 공사계획 허가(항만법 제9조 제2항)를 의제하고 있을 뿐,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는 의제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개별적으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건 방파제의 성격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의 근거법령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건 방파제는 산업입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내 용	-	2015-06-26

동 사업이 강원도에서「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방파제의 투자비 보전방법도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 자료 및 법령

관련 자료 및 법령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0-72호)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6조, 제37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항만법 제9조, 제15조

5. 공사비 검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관련 공사비 조달청 검수

질 의 요 지	–	–
OOO(서울 송파구 거여2동)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 귀속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동 사업과 같이 국가 비귀속 전용부두인 경우에도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696	05–31
우리 부는 2008.1.31.「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제14조제3항)을 통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신설·개축공사와 공사비 30억원 이상 준설공사의 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내용의 전문기관(조달청) 사전검토를 의무화 한 후, 비관리청이 토지 취득시 취득범위를 토지조성사업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9.12.14「항만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제3항)하여 토지형태로 조성하는 비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동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의무화 있음. 4.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국가 비귀속 전용부두 일지라도 토지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검토가 의무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08.02.04.) 제14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③ 관리청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대상 항만공사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6. 기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매각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	2010-10-15
OOO(인천 남동구 논현동)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총사업비 약1천억원)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을 등록하고 저당권이 설정(약1천2백억원)된 항만시설의 일부(약 3백만원)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0-10-20
1. 항만시설관리권을 매각 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 시 또는 도)의 인가를 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의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되고 있음. 2. 「항만법」 제17조에 따르면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58조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18조의 규정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 2010.07.13.)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제18조(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민법 (시행 2009.08.09.)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질 의 요 지	-	2015-05-01
OOO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회 신 내 용	-	201-05-06

1. 귀속여부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는 「항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같은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 비관리청이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가 결정됨
   - 동 건은 국가 귀속된 '사일로'에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로서 이를 증축으로 본다면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항만법」에는 귀속의 판단기준인 '증축'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일반적 해석을 위해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인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색 및 벽체 보강은 시공 후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보강 시공분을 비귀속하는 것도 불가함
   - 따라서 동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하되, 투자비 보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투자비 보전 여부
   -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경과 등 현저한 이유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 보전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절 항만시설 관리 · 권한 등

비관리청 항만시설 보수주체

질 의 요 지	한국가스공사 개선팀-415	'07.3.8
OOO공사		
1)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 2) 비관리청이 시행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비용에 대한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3)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후 항만공사(PA)로부터 투자비 보전을 받고 있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 4) 항만시설 관리청이 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공사(PA)로 변경되었을 경우 비관리청이 적용받는 법은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중 어느 법률이 우선하는지 여부 5)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는 항만공사(PA)가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만공사(PA)에서 수행해야 하는 유지보수의 범위 여부 6) 항만공사(PA)에서 귀속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전액 한국가스공사 부담으로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7) 유지보수 주체와 관련한 법정중재 사례 여부		

회 신 내 용	민자계획과 -	-
○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관리청이 시행하나, 법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제외됨. ○ 아울러, 비관리청이 사용(전용 등) 중인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귀책사유에 따라 유지보수 주체가 결정됨. ○ 국가 귀속시설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나, 귀책사유가 비관리청 및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항만시설(동건 관련 "인천 LNG 생산기지내 한국가스공사 전용 B/C부두')의 유지보수는 「항만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PA)와 보수주체 등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항만공사(PA) 관할 구역 내의 항만시설 사용자는 「항만공사법」 제4조,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지보수 범위 및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항만공사(PA)와 협의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와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우리부와 법정 중재 등을 시행한 사례는 없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등)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1394	'10.4.22
OOO지방해양항만청		
○ 목포 삼호지방산업단지내 '라파즈한라시멘트 부두'의 이전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목포신항에 대체부두를 건설한 경우 기존부두에 설정되었던 '항만시설관리권'을 신설한 대체부두로 이전하여 설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정책과-1882	'10.4.30
○ 기존 부두의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법」 제17조에 따라 물권으로 봐야 하고, 물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임. ○ 따라서, 대체부두의 신설로 기존 부두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권리의 대상(객체)이 없어지므로 항만시설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대체부두에 새로운 별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종전 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 설정은 법리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만법에 근거한 비관리청(비귀속) 항만공사의 부분준공 및 소유권 등기

질 의 요 지	–	'10.12.24
OOO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과 관련, 부분준공 및 소유권 등기 등 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 신 내 용	–	'10.12.30
○ 조성된 부지 및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전 사용은 「항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나 ○ 부분준공은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법 제12조에서는 허가받은 항만공사의 완료시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면 항만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차수별 분리를 위한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변경)은 인·허가 행정기관인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2조(준공확인)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6조(준공확인)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인가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요 지	-	'10.12.27
OOO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취득한 항만시설(야적장)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기재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중 별지 도면표시 (나)부분 3.360M2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한다 " 라는 민사확정판결(화해조서)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 의무 이전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서 (별지25호서식)에 양수인(원고)의 서명 날인만 있을 경우 양수인 단독으로 권리, 의무 이전 인가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회 신 내 용	-	'10.12.29
○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됨. 이와 같은 권리 일부분의 이전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에서 총사업비와 항만시설의 범위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동 건 관련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결정' 판결만으로는 양수인 단독의 권리·의무 이전은 곤란하며, 양도인(피고)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를 확정한 후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또한,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용목적의 비귀속 항만시설 및 토지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등기 관련

질 의 요 지	–	'11.4.22
OOO		
○ 비귀속 항만시설과 토지의 소유권 등기 절차 및 관련규정?		

회 신 내 용	–	'11.4.26

○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하시기 바람.
붙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및 건축물·토지 등기 절차.

구분	관련규정	소관 및 절차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공사착수계 제출	「항만법」 제11조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건축허가 신청 및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8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토지 신규등록 측량 및 공부정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
지적도 및 토지대장 발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해당 지자체)에 신청
준공보고서 제출 및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항만법」 제13조	사업시행자가 해당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등재 신청
건축물 및 토지 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동법 제40조, 제42조	등기권리자가 해당 등기소에 제출
건축물 및 토지 등 기필증 교부	「부동산등기법」 제67조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건축물 및 토지 등 기필증 통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및 동법 제68조의2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
건축물 및 토지 등기필증 교부에 대한 과세자료 송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	해당 등기소에서 관할 세무서에 송부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질 의 요 지	-	
OOO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사업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된 후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일부를 인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가?		

회 신 내 용	-	'11.7.4
○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인·허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권리·의무의 이전은 「항만법」 제87조에 따라 소관 항만관리청장의 인가 대상이며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변경을 필요로 함. 4. 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의무이전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사업비 매매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항만시설관리권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무상사용신고 또한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항만시설관리권이 등록된 항만시설의 총사업비를 매입하여 무상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매매계약 → ②권리□의무 이전 인가 → ③ 항만시설관리권 변경 등록 → ④ 무상사용신고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항만시설관리권자의 무상사용신고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9조 (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4999	'12.8.21
OOO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물류과장)		
○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여부 ○ 2.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에 해당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150	'12.9.3
○ 동 부두는 항만기본계획상 목재부두임은 물론 목재류를 처리하는 부두로 인허가한 비귀속 전용(專用)시설로서 항만기본계획 및 인허가 변경 없이 다른 종류의 화물취급은 부적정하며, 비관리청 전용(專用)목적의 시설은 항만기본계획과 인허가 내용에 부합하는 화종취급에 한해 해당됨. ○ 화주는 항만기본계획 및 인허가 내용에 부합하는 화물로써 비관리청이 그 화물의 소유자임을 뜻하고 그 화물의 성분, 재료, 형태 등으로 화주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 참고로 비관리청이 화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전용화물로써 특정화주와 화물처리 계약 후 그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용부두에서 취급 가능함.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권리의무를 이전받는 자의 자격

질 의 요 지	–	–
OOO		
○ 항만법상의 권리의무 이전을 통해 총사업비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212	'12.9.19
1. 항만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무를 양수받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그러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허가조건에 해당시설의 운영목적,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조건의 이행이 가능하고 해당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인가신청 시 관련사업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설을 시설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항만법 시행령 제3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4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4.4>

사업대상구역에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비관리청"이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질 의 요 지	-	-
OOO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항만공사를 시행코자 함에 있어, ○ 사업 대상구역에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비관리청"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비귀속)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내 용	-	'12.12.18
○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비귀속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 사업구역에 이미 국유재산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항만법 제77조(토지 등의 수용)에 따르면 "국가"는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제 받고 있으나, "비관리청"은 토지 수용의 권한을 의제 받지 못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105	'13.4.5
OOO지방해양항만청		
○ '비관리청(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원자재의 화물을 국내 비관리청의 수요가 아닌 국외 반출목적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부두에서 취급(하역, 보관)코자 할 경우 ○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을 취급"과 관련된 시설로 보아, 계류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 허가 가능 여부 ○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13.4.29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공급·판매자의 위치로 '광석'의 판매를 신설부두에서 직접 할 경우 화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나 '거래처'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화주'로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두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요소 해소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허가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사업계획서는 국내 3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석' 채취권을 토대로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부두를 통해 반출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국외 1개사의 현 위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는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인도 곤란하며,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려움 ○ 귀 청에서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울산신항 9번선석 화물취급 제한 이의

질 의 요 지	산업농림환경민원과-2977	'13.4.11
OOO위원회(산업농림환경민원과)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된 국가 비귀속 (민자)부두에서 잡화(목재, 기계류, 비료, 액체화물 등)를 급(하역, 운반 등)하는 것이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가?
○ 국가 비귀속 부두를 운영하는 비관리청이 항만기본계획에서 정한 목재부두에서 잡화를 취급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목재→잡화)이 가능한가?
○ 현재 운영중인 무역항 중 국가 비귀속 부두이면서 잡화를 취급하는 부두 현황은?

회 신 내 용	-	-

○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은 「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임
○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 「항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있다"와,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이면서 잡화를 취급하는 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은 확인이 곤란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항만법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

비귀속 계류시설의 문제점 검토

질 의 요 지	–	–
–		

○ 전용 화물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비관리청은 투자비 확보를 위해 당초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함에 따라 문제 발생
1. "공용의 화물" 을 취급에 따라 허가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에 문제
2. 부두 건설 후 제3자에게 매각(용도변경) 추진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13.4.22

○ 문제발생원인
- 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비관리청이 "화주"와 "전용화물"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한 허가가 발생될 가능성 소지
- 준공 후에는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성 논리로 관원 또는 민원 발생 소지

○ 검토의견
- 비귀속 계류시설이라 하여 무분별한 허가(항만시설 확충)는 항만시설의 과잉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 저하, 또한 수요 예측의 오류 등 옳지 못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근 부두(특히, 민자부두)와의 운영 경쟁상의 민원 등도 발생
- 따라서,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추진
- 제도개선 방안

1. "화주", "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 재 검토 및 구체화
2. "전용화물"의 물동량(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방안 마련
3.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용도로 허가받은 품목 외 다른 품목의 추가 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1AA-1308-122361	'13.8.27
OOO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로 "특산품 판매시설" 시행(완료) 후 판매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 판매 품목의 종류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13.9.2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의 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 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		

목재의 범위 및 항만운송사업(화물유치 등)의 범위

질 의 요 지	1AA-1310-059602	'13.10.14
OOO		
○ 목재부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목재의 범위 ○ 한정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화물유치 및 하역작업) 범위		

회 신 내 용	-	-
○ 목재부두로 되어 있는 목재의 범위는 붙임과 같고, 국가 비귀속 부두는 비관리청이 제출한 항만공사계획과 항만기본계획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정한 부두용도에 맞게 화물이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업 중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 · 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해 축조된 국가 비귀속부두의 경우 항만기본계획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시 정한 부두용도에 맞게 화물이 취급되어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사업의 등록)(2013.3.23.)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 · 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비귀속 시설의 제3자 사용 가능여부

질 의 요 지	–	–
–		
○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가부 및 예외의 인정범위와 제3자 범위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전용권 범위 내에서 모회사에 귀속된 항만시설 사용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14.2.25
○ 비귀속 부두의 허가부여는 사유 재산권리도 가지며, 항만시설 사용의 전용권을 득하는 권리임에 따라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전용권리가 제3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회사 또한(제3자의 범위에 포함) 사용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임. ○ 다만, 준공 후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과 관원 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각기 계층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항만시설운영권리와의 관계

질 의 요 지	1AA–1407–042779	'14.7.8
OOO		
○ 항만시설인 하역설비, 이송설비, 보관설비 등의 시설물로 비귀속 시설물로 설치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모두 함께 부여받는지, 아니면 항만공사와 항만시설물의 운영은 별개의 사안인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534	'14.7.10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항만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면, 동 "공사"를 시행할 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를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아울러,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비관리청이 축조한 부두에서의 화물 취급

질 의 요 지	-	-
-		
○ 비관리청(수입업자)이 원자재나 범용성 상품 등의 화물을 자사(비관리청)의 수요가 아닌 국내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부두에서 취급(하역, 보관)할 경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과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내 용	-	-
○ 「항만법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을 목적으로 한 전용(專用) 계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비귀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처(여러 업체)에 판매하는 화물은 비관리청 화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화주가 다수인 울산항내 액체 및 케미컬 탱크터미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킬 실익이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동 사항은 사실상의 전용으로 간주가 가능함 ○ 따라서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은 비관리청이 직접 생산한 제품과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완제품 제조를 위해 생산한 구조물 또는 재료 등으로 한정해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9.24>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위판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6.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교육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2014.6.23.)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절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책임감리 선정

질 의 요 지	-	2008-06-17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축공사 감리방법에 관한 질의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4호) 제20조제3항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감리전문회사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이란?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국가 귀속사업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감리자 선정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 귀속사업인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감리자 선정		

회 신 내 용	-	2008-06-26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모두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귀속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이 감리회사를 선정하고, 감리계약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통보하면 비관리청은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착수전에 계약을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5항(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민자투자사업 선정기준

질 의 요 지	-	2008-09-11
OOO		
○ 민자사업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 최초제안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선정에 탈락되는 경우		

회 신 내 용	-	2008-09-22
○ 민자사업자의 선정 기준 -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절차에 의거 추진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동법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에 의거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종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됨 ○ 최초제안자 선정 후 탈락된 경우 유무 -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 사업의 추진절차)에 의거 추진되나, 동 절차에 의거 최초제안내용이 채택되더라도 제안내용을 공고(제3자공고)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최초제안서 + 3자공고시 제안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므로 최초제안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공기연장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5-18
OOO		
○ 평택 OO부두 조성사업으로 발주처는 (주)OOO로 항만청 비관리 사업대상이며 비귀속 공사의 공기 연장 해당 여부 및 기간 연장 방법 문의 -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2009년 5월17일 현재) - 하도급 기성도 발주처 직불이나 하도급 업체 기성금 미지급 -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법 변경 후 시공 등		

회 신 내 용	-	2009-05-25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공법변경 후 시공에 따른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그 밖에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공기연장 가능여부

질 의 요 지	-	2009-08-03
OOO		

○ 항만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 의거 실시설계 준공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항만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시계획승인을 당연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09-08-04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서 항만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 조건 이행,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준공기한 연장 가능여부, 실시계획 승인 당연 취소여부, 건설이자 제외 여부는 해당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사업시행자의 귀책여부,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제63조제2호(법령위반 등에 대한 감독처분)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감리업체선정 관련

질 의 요 지	-	2008-09-23
OOO		
○ 비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비귀속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체 선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	2008-09-29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에따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모두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 귀속시설 : 관리청(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감리계약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면 비관리청(사업시행자)은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착수전에 계약을 하여야 함 - 국가비귀속시설 : 비관리청(사업시행자)에서 직접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제20조(책임감리 시행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 또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감리전문회사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리업무 시행(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에 필요한 감리전문회사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감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5-18
OOO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공사원가 적정성심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 사전검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2009-05-18
○ 상기 업무처리요령은 공사비의 과다 계상 방지 등 설계내용의 사전검증을 통해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도서 검토와 같이 적정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착공 전 측량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5-19
OOO		

○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에 착수한 OO항로 준설공사(투자비 비보전, 수토대의 납부 조건) 착공전 측량에 관하여 질의
- 시행허가 조건에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토록 되어 있어 감리단과의 감리용역 계약 후 준설공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중 감리단으로부터 해당 준설 위치의 착공전 측량이 이루어져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는 업무지시를 받음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동일하며 실시계획승인시 해당지역의 수심측량 및 해저의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착공직전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였던바, 착공전 측량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회 신 내 용	-	2009-05-20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2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리원은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동 준설위치에 대한 착공 전 수심측량 실시는 실시설계승인시 설계도면상의 수심과 착공시 실제 수심이 일치하는 지를 시공자와 감리단이 상호 입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제13조(확인측량 실시)

준설공사 준공관련

질 의 요 지	-	2010-04-29
OOO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준설공사에 대한 수로고시 완료시 수로조사성과의 서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4-30
○ 항만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준설공사의 경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계획수심을 확보한 후 수로고시를 완료하였다면 해당 수로조사성과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준공확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항로 유지준설 설계가능자 및 건설기술자 요건 관련

질 의 요 지	-	2010-08-10
OOO		
○ 투자비 비보전 비관리청 유지준설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가능자 및 해당 건설기술자 요건 등에 대하여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8-11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유지준설공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 하실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 요건으로는 항만법에 의한 별도의 항만기술자는 없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건설기술자를 의미함 ○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설구역과 주변시설의 안전성 관련여부 및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방안, 환경오염방지 대책, 적정 준설공법 선정 및 준설토 투기방안 등 사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정의), 제6조의2제1항(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공사설계도서의 작성) (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대상 여부

질 의 요 지	-	'10.9.17
OOO		
○ 광양시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중심상업지역 부지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 신 내 용	-	'10.9.20
○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항만구역으로 동 구역에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하였다거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항만관리청과 협의한 경우 인·허가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항만배후단지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해당항만관리청과 협의하여 의제 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시설 귀속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질 의 요 지	-	2010-08-20
OOO		
○ 전용부두 목적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여부와 동 시설의 사용료 징수권한이 있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8-23
○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 비귀속된 비관리청 소유 전용부두의 경우에는 국가 귀속 후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공용부두와는 달리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5조제1항(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위판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官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6.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교육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시계획 승인후, 사업지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질 의 요 지	-	2010.10.15
OOO(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사업구역내에서 승인받은 건물연면적 규모의 변경은 없이 형태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 가로40m X 세로42m → 가로42m X 세로40m)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연면적을 축소 또는 증 가하여 변경할 수 있는 범위.		

회 신 내 용	-	-
관련규정인 「항만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제외 대상 및 변경가능 규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한 실시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의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우선 감리 또는 감독의 검토를 거쳐 항만관리청에 보고한 후 조정 시공하고, 준공 전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2010.7.13.)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외에 제3자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1986	2011.6.21
-		
「항만법」 제85조제6호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자 이외의 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694	2011.06.2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요건, 시행허가 신청, 신청내용의 검토 및 시행허가의 내용 등은 같은 법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3항과 「업무처리요령」 제10조 및 제13조에서 인·허가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항만관리청에서 시행허가 신청내용 검토 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부여한 해당시설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2011.1.1.)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공사 시행자 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	2011. 7. 25.
OOO(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 「항만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신청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되는지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질의		

회 신 내 용	항만정책과-3402	2011. 7. 27
1.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재량행위로서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신청 내용(공사목적 및 사업계획 등)이 해당 항만의 기능과 여건 및 특성에 따른 항만운영계획과 부합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해당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임.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동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3항 제2호(2010.12.1) 2.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2010.12.1)**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동일 영향권 내 A사, B사의 부두건설 및 운영

질 의 요 지	-	2012.01.16
○○○(전남 광양시)		
○ 질의배경 - 부두가 필요한 A사와 B사가 각각 필요에 따라. 동일 영향권역내에 별개의 부두를 건설하려고 때, <질의 1> ○ B사를 사업자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 실시계획 승인은 A사와 B사가 별도로 받아, 부두를 건설하는 경우 A사와 B사를 별개의 사업자 또는 동일한 사업자로 봐야하는지 <질의 2> ○ B사가 부두 전체를 건설 한 후, A사에게 하나의 부두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할 수 있으며, 각각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부두를 건설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됨. 또한 1개의 회사가 2개의 부두를 건설한 후 다른 회사가 그 부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소관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권리 · 의무 이전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87조(권리 · 의무의 이전)(2011.8.19.)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 · 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 · 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 · 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 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 · 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시 설계자문 관련

질 의 요 지	1AA-1301-075369	2013.1.18.
OOO(경기 김포시 고촌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업도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와 민간에서 발주하는 현 사업(질의내용 참조)도 공사규모상 책임감리 대상이되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56	2013.1.25.
1.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설계자문)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책임감리시행 등)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공종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2012.7.18.)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PA 관할항만의 유지준설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836	2013.2.7.
-		
통항상의 문제로 유지준설 수행이 필요하고, PA관할 항만으로 PA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PA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귀속)으로 시행 가능 한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240	2013.2.12.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단계별 실시계획 승인 가능 여부

질 의 요 지	1AA-1307-165051	2013.7.31.
OOO		
항만공사 단계별 실시계획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부두와 인접하여 탱크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 ·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관할허가기관과 협의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시행령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2013.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질 의 요 지	1AA-1312-140058	'13.12.27
OOO		
○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항만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권리, 의무 이전 인가 없이 단순히 변경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의 가능 여부 ○ 만약, 신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 허가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변경 승인 되었다면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권리, 의무도 신규 법인으로 이전 인가 되는 것인가? ○ 컨소시엄 업체에서 신규 법인 전환 후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55	'14.1.3
○ 「항만법」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에 의하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서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권리·의무의 이전없이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허가 여부 등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 허가내용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허가관청(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3.23.>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항만부지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설치 시 시행허가

질 의 요 지	1AA-1402-083410	'14.2.17
OOO		
○ 항만부지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설치 시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회 신 내 용	-	-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항구내의 어구 수리장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허가를 득해야 함. ○ 다만,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를 어항구내에 설치하려는 것이 「항만법」 제30조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 사항인지 또는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사용하여 어항구내의 어구 수리장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2013.3.23.) 제2조(정의) <개정 2011.4.14, 2012.2.22, 2012.12.18, 2013.3.23>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요 지	1AA-1406-162486	2014.6.30.
OOO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후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1442	2014.7.1.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같은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및 제1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착공신고 및 준공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음. 또한, 사용승인은 「항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 이행이 필요함. 다만, 준공 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12조 제4항 단서조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인 동시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 일괄 처리 절차도 있음), 이는 개별 법률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절차로써 실제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각각 받은 것과 같은 사정이라고 할 것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4절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4-15
OOO		
○ 현재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이 국계법상에서 지정한 30% 변경 범위를 벗어나고 동일소유자 획지를 분할 및 합병할 경우 매번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변경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2009-04-16
○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공원시설의 높이 제한

질 의 요 지	–	2009-04-23
OOO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11조8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은 3층(약 12m)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공원시설인 전망대의 높이도 3층, 12m를 초과여부		

회 신 내 용	–	2009-04-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르면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망대라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층수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9호(면적 · 높이 등의 산정방법)

마리나 항만구역내 배후지에 주택 등 주거시설 설치 관련

질 의 요 지	-	2009-09-01
OOO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항만구역내 배후지에 주택 등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09-09-04
○ 마리나법의 제정목적은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요트, 보트 등 마리나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위락시설, 쇼핑센터, 수족관, 공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주로 공공성이 강한 마리나항만을 조성, 개발하려는 것으로 마리나 항만구역 내 일반 주거시설(아파트, 주택 등)의 용도로는 동 법률 취지상 입지가 곤란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10호(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관련 인허가 등

질 의 요 지	–	2010–07–15
OOO		
○ 항만시설(지목 :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고자 함에 있어 동 사업을 항만공사로 분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	2010–07–16
○ 비관리청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 이외의 기관(민간)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항만시설의 신설 · 개축 · 유지 · 보수 ·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항만의 운영 · 관리와 관련 없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은 항만시설이 아님에 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관광숙박시설 입주 여부

질 의 요 지	건축환경과–2376	2010. 8. 23.
–		
1.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지원시설(상업시설)용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동 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5)에서 규정한 지원시설(숙박시설)로 보아 건축이 가능여부.		

회 신 내 용	항만정책과–3402	2010. 9. 15
1.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있는 항만시설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 5)에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이 이에 속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숙박시설이며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법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관광숙박시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항만법 제2조(정의) 제5호(2010.7.13.),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2010.7.13.)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4항

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처리요령 관련 질의

질 의 요 지	항만물류과-6075	2012. 6. 26
-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되거나 소요가 예상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되는 경우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업무처리요령 제5조에 의거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행 여부		

회 신 내 용	항만투자협력과-852	2012. 6. 27
1.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가 총사업비 보전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임에도 타당성 검증 미흡 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절차)이 미흡하다는 200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등에 따라 2008. 5.7 업무처리요령을 개정(제5조 신설)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 공사에 대하여는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하고 동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항만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상 사업 공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5호마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배후단지(항만시설)'로서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사업 대상구역 내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질 의 요 지	-	2012. 12. 18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 (이하 "비관리청")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항만공사를 시행코자 함에 있어, 1. 사업 대상구역에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비관리청"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비귀속)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내 용	-	2012. 12. 18
1.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비귀속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항만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사업구역에 이미 국유재산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입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제5절 법령해석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관련 항만법령

항만법 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가(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제도적 의의 및 적용 법령

- 비관리청항만공사는 1967년 항만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
  - 열악한 재정상황 보완과 국내 항만시설 확충, 민간자본의 유치 및 활성화, 항만의 공공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 실수요자들의 신속한 항만시설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시행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 적용 법령
  -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항만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 관련 항만법령
  -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시설(항만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각목)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법 제9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법 제10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법 제11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법 제12조)
  - 항만시설의 귀속과 무상사용(법 제 15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 항만시설관리권

2. 법령별 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시설(항만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각목)

-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 제5호 각목)
  - 항만구역 안 및 항만구역 밖의 기본시설 · 기능시설 · 지원시설 ·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것(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할 예정인 시설 포함, 항만법 제9조 제1항)
- 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신설 · 개축 · 유지 · 보수 · 준설등에 관한 공사
    - · 신설(축)
      - ▷ 건축물이나 시설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이나 시설을 축조하는것
      -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것
      - ▷ 기존건물이나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것
    - · 개축 :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이나 시설을 다시 축조하는것
    - · 유지 · 보수
      - ▷ 건축물이나 시설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멸실 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
      - ▷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 하여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작업 및 재정적 ·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법 제9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항만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1호 서식). 단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 · 보수공사는 예외(법 제9조 제2항 단서)
- 비관리청이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허가를 해주어야 함(법 제9조 제3항, 기속행위적 성격)

-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래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각 호,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요령 제4조 제4항)
  - 법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 · 개축공사(시행령 제11조 제1호)
  -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시행령 제11조 제2호)
  - 고정 하역설비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공사(단, 자기 화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등은 제외, 시행령 제11조 제3호, 요령 제4조 제4항)
-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게 공사를 허가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함(법 제9조 제6항, 시행규칙 제6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법 제10조)

-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이를 공고해야 함.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함(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비관리청은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비관리청이 승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허가를 해주어야 함(법 제10조 제3항, 기속행위적 성격)
- 비관리청이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항만시설(비귀속 시설:계류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 · 판매시설은 제외)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로 갈음(법 제10조 4항,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지 5호서식)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법 제10조)

-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이를 공고해야 함.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함(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비관리청은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비관리청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허가 해야 함(법 제10조 제3항, 기속행위적 성격)
- 비관리청이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항만시설(비귀속 시설:계류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 · 판매시설은 제외)에 대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로 갈음(법 제10조 4항,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지 5호서식)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15조)
  - 항만건설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호)
  -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5조 제2호)
  - 비관리청이 아래의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허가 신청과 항만공사실시게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제4항)
    - ▷ (제1호) 야적장의 포장(鋪裝)
    - ▷ (제2호) 창고·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제3호)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 ▷ (제4호) 선가대(船架臺)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 ▷ (제5호)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호의2) 지원시설(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 ▷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법 제11조)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법 제11조 본문).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가능(법 제11조 단서, 시행규칙 제8조, 요령 제22조)
  -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 제1호)
  -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시행규칙 제8조 제2호)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요령 제22조 제1호)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요령 제22조 제2호)
  -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요령 제22조 제3호)
  -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요령 제22조 제4호)
-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는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음(법제13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당해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음(법 제14조, 시행령 제17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법 제12조)

- 비관리청은 항만공사 완료시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7호 서식)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는 사용가능(법 제1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항만시설의 귀속과 무상사용(법 제15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항만시설 국가귀속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비귀속(법 제1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8조)
-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분쟁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해결(판례, 대구지법 1999.3.11, 선고, 98구2172, 판결)
-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항만시설사용료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준공 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함(시행령 제20조)
  -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시행령 제 20조 제2항, 제1호)
-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항만시설사용료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함
  - 제31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료가 면제되는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5항, 제31조 제1항)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비관리청이 국가귀속시설의 총사업비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0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항만시설관리권

- 비관리청이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유지 · 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16조 제1항)
- 1991년 도입: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의 개발 유도
-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과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법 제16조 제2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7조)
-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음(법 제18조)
-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법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제 4 장 관련 법령 적용 및 판례

제1절 관련 법령 적용

1. 법령 해석 관련

1) 무상사용권(법 제15조)

해석

현행법	(구)항만법	해석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6.8.5. 법률 제7678호)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③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u>당해</u>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비관리청은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 사용 가능(시행령 제27조 제7호) -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해당 항만시설외 다른 항만시설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15조의 무상사용권의 내용 *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비관리청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다른 항만시설도 사용할 수 있음 *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주요 판례 요약

- 사건명 : 무상사용권 확인
  - 사건번호 : 대법원 공2009하, 1548
  - 기초사실 : 사일로 설치를 위한 파일공사 시행시 매립한 토지가 국가 귀속시 파일 설치 공사비에 대한 투자비 보전 요구
  - 판단 :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당시 항만법 규정에 따라 파일은 사일로 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함

- 사건명 : 무상사용신고 수리거부 취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두6265
  - 판시사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건명 : 포항신항만시설 무상사용권 확인
  - 사건번호 : 대법원 99두 10148
  - 판시사항
    -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항만관리청이 법령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산정하였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사용료는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에 미달함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님

● 사건명 :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확인

-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 8745
- 판시사항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 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사건명 :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행정심판 2014-12330
- 기초사실

· 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투자비보전 대상도 아니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고, 청구인도 허가조건에 이의가 없다는 회신을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준설공사로 항로 및 정박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항만법」 상의 국가 귀속시설이므로 투자비 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거부 회신

- 판단 : 기각

- 사건명 : 비관리청시행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사업비보전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사건번호 : 행정심판 2007-08052
  - 기초사실
    - · 비관리청은 구「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
    - · 승인 당시 항로 및 선회장과 박지의 장래 유지준설은 피승인자가 시행하기로 하는 특칙을 두었음
    - · 비관리청은 항로 확장고시를 요청하였고, 항만관리청은 이 사건 항로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에 항로의 유지·보수의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에 대한 투자비 보전은 불가 통지
  - 판단 : 기각
- 사건명 :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3900
  - 판시사항 : 법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판결요지 :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함)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사건명 : 부당이익금 반환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2001653
  - 기초사실 : 비관리청의 연차별 화물유치계획량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이행보증금의 국고에 귀속조치에 따른 임대차계약 및 국가계약법 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사례
  - 판결요지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법령해석례

- 제목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 번호 : 법제처 15-0056, 2015.5.29, 강원도
  - 질의요지 :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 회답 :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음

2) 항만시설관리권(법 제16조)

해석

현행법	(구)항만법	해석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07.4.6. 법률 제8338호) **제16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항만시설관리권의 적용 범위 및 내용

-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법제처 05-0147 해양수산부→법제처)

-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 "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구)항만법 (시행 2008.6.28. 법률 제8819호)

-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음

● (구)항만법(시행 2005.12.1. 법률 제7571호)

- 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음

3)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법적성격

행정규칙의 성격(대법원 판례)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거부처분 취소(대법원 1998.9.8. 선고 98두6272 판결)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놓은 업무처리요령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음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공고 취소 등(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음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전용의 해석

- 항만법 시행령
  -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전용의 해석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
    - ▷ ① 전용(專用)은 일반적으로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혹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쓰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
    - ▷ ②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비관리청의 전용 목적"),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을 보면 비관리청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로 해석되는 점
    - ▷ ③ 「항만법」 제1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항만의 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항만시설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시설이고, 비관리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나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 ▷ ④ 귀속요건과 이에 따른 사용의 제한도 「항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 ▷ ⑤ 「항만법」의 입법취지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관리청에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정화주'의 의미 관련

- 항만법 시행규칙
  -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불특정(불확정)개념이라서 관리청의 재량의 여지가 큼. 따라서 특정화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은 화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화주는 인적 주체이므로 취급하는 화물의 숫자나 동종화물인지 이종화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인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해석상 특정만 가능하다면 화주의 수는 2인 이상 일수도 있다고 판단됨

항만법 제87조의 권리 · 의무의 이전 관련

항만법	항만법 시행규칙	연혁
제87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항만법 제정시: 권리 또는 의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 -1991. 6. 9. :관리청의 허가에서 **인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요건은 당해 항만공사의 전체공정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제한 -1999.8.6. 개정: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공정에 관계없이 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2000. 7. 29.: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은 당해 항만공사의 전체공정이 기존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완화 -2014. 9. 25.: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의 요건에 대하여 기존 100분의 30이상에서 전체공정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

2. 세무 · 회계 관련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실무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해 국가 귀속된 시설의 단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가귀속시(준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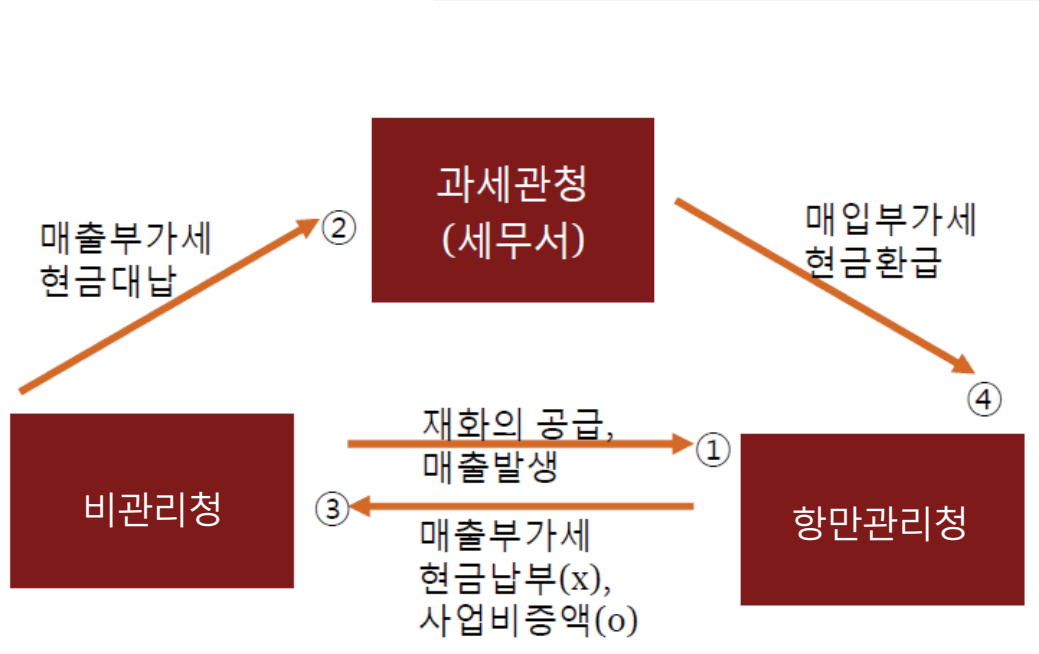

① 준공시(국가에 귀속)→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400원)에 따른 사업자 측 매출발생
-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매출부가세(40원=400원×10%)를 현금으로 수취

② 사업자는 매출부가세(40원=400원 x 10%)를 세무서에 대납. 단, 정부는 동 매출부가세를 현금의 지급이 아닌 사업비 정산으로 처리(사업자가 매출부가세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 후 동 금액만큼 사업비 증액)

③ 국가귀속 사업비는 440원(=400원 + 40원)으로 증가 → 동 금액만큼 운영기간 중 무상사용권 인정

④ 정부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인수를 위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음

- 무상사용시(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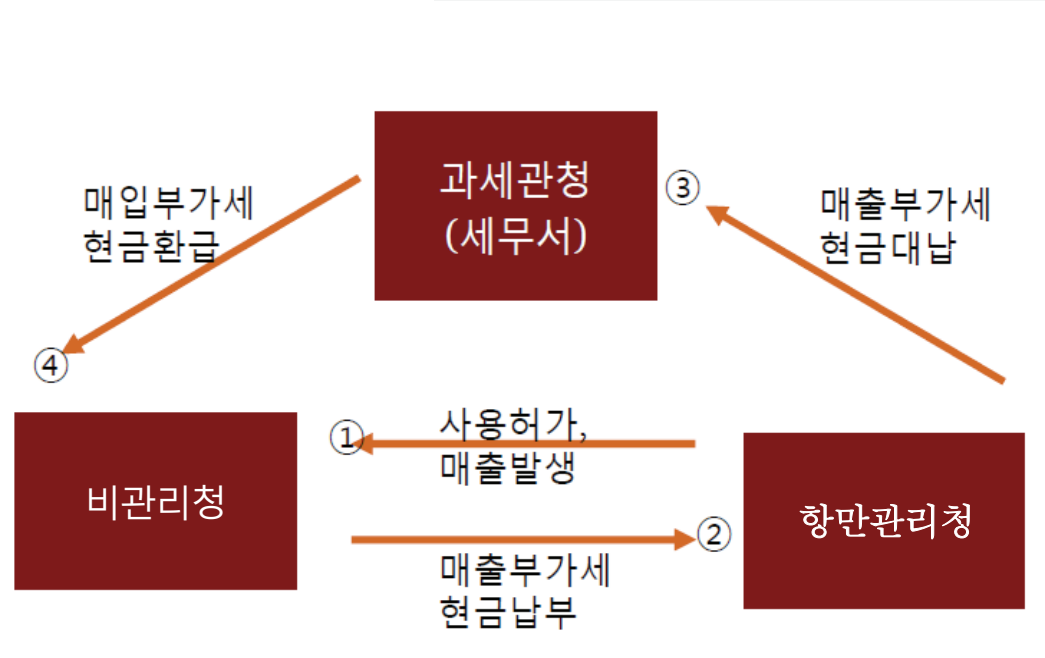

① 사용허가(정부 . 사업자)
- 상기 110원(=100원+10원)의 금액을 11년간 무상사용 부여

② 무상사용시 → "용역의 공급(부동산임대)"
- 정부는 사업자로부터 매출부가세(4원=40원 × 10%)를 현금으로 수령

③ 정부는 매년 상기 매출부가세 4원을 수령하여 과세관청에 대납

④ 사업자는 상기 납부한 4원을 매입부가세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부가가치세 관련 정부방침

(1) 관련공문 : 항만관리청국유재산 사용(점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개선방안(2010. 07.07,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14509)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근거

- 납부대상 : 국유재산 임대료, 민간투자법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인한 무상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부동산 임대업
- 납부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영 제38조 및 관련 유권해석
  -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 '07.3.22] : 국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0000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국세종합상담센터-1880, '07.7.32] : **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및 납부절차

- 납부시기 :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 납부절차
  -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하여 해양수산부에 입금
  - 해양수산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입금액을 검토·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일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 징수 및 신고·납부 기관 일원화

- 신고·납부 주체 : 사용 허가를 담당하는 항만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에 해당 항만관리청 기관 명의로 직접 신고·납부
  - 비관리청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항만관리청의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근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10.2.26)
  -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자체 및 자산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음**

(2)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해 국가 귀속된 시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발생개념 : '**국가귀속**'은 **재산의 '양도-양수**(재화의 공급)'이고, '**무상사용허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로서 서로 다른 **별건으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
- 국가귀속시 비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상사용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최초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국고로 세입 조치**

* 무상사용료(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매출세액」에서 국가귀속 시설의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의 규모, 사업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2가지 방법을 택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① 무상사용기간 동안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에게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부과**(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 금액만큼 관할 **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
  - ② 국가귀속 및 최초 무상사용료 부과 시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 부과**(세금계산서 발행) 및 징수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발생 도식도>

	항만관리청			비관리청	
국가귀속	⑤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40원) ←	④소유권 취득(440원), (사업비 400원, 부가세 40원) ←	③국가귀속 (440원) <재화의 공급> ←	①사업시행 (사업비 400원, 부가세 40원) →	②부가세 납부 (매출세액 40원)
무상사용 (분할신고시)	④부가세 납부 (매출세액 4원) ←	①사용허가 (사용료 40원, 부가세 4원) →	②부동산 임대 (40원) <용역의 공급> →	③무상사용 (40원) 부가세(4원) 현금납부 →	⑤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4원)

* 총사업비(가정) 440원 = 사업비 400원 + 부가가치세 40원

연간 무상사용료 가정 40원 → 11년(40원×11년)간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4원

행정질의

(1) 관련공문 : 항만투자협력과-3116(2015.12.3.)

- 질의 :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답변
  - 총사업비 산정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그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함
  - 비관리청이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동일 과세기간 중에 국가귀속과 무상사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총사업비 산정이 가능함**

제2절 판례

무상사용권 확인

사건번호	대법원 공2009하,1548	원심	광주고법 2008. 5. 9. 선고 (전주)2007누844 판결
원고 : 주식회사○○		피고 : 대한민국	
결과 : 국가승소			

1. 기초사실
   - 부두 상부 양곡싸이로, 하역기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면서 항만공사로 준공되는 시설물은 국가 비귀속조건으로 허가
   - 사일로 설치를 위한 파일공사를 시행하였고 파일을 매립한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었고, 안벽 설치 레일도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투자비 보전을 요구
   - 항만관리청은 파일공사는 사일로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로 원고가 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만공사를 허가·시행하였고, 레일은 하역장비시설인 언로더의 운행을 위한 부수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 비귀속 통보

2. 원고의 주장
   - 파일공사는 상부 하중을 견디기 위한 부지 지반 강화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파일은 사일로 시설의 부지와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부지에 부합되어 부지의 일부가 된 것이지, 사일로시설 그 자체이거나 사일로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 아니며, 사일로시설의 부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파일공사로 인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일로가 설치된 구역의 토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음

3. 피고의 주장
   - 파일공사는 사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실시된 부수공사일 뿐 사일로시설 부지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며, 파일을 그것이 매립된 부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사일로 시설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부수시설에 불과함
     · 따라서 사일로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이상 그 일부이거나 부수시설에 불과한 이 사건 파일 또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임
   - 또한 항만관리청은 이 사건 항만공사로 설치될 시설물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항만공사를 허가한 것인데, 사일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수공사 과정에 매립된 이 사건 파일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당초에 이 사건 항만공사로 설치될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항만관리청의 의도와도 정면 배치됨

4. 판단

- 파일이 사일로 시설 또는 사일로 시설의 부지 중 어디에 부합된 것인가?
  · 부동산에 부한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4354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시설의 객 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항만공사로 인한 시설물이 준공될 당시의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사일로 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이 사건 사일로 시설의 일부로 보는 이상 이 사건 파일은 사일로 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함

□ 관계법령

-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등),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 항만법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등), 제18조(총사업비의 범위)

무상사용신고 수리거부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 2001두6265	원심	부산고법 2001. 6. 29 선고 (99누 3874판결)
원고 : ○○주식회사		피고 : 대한민국	
결과 : 국가승소			

1. 판시사항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참조조문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17조 , 항만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19조 ,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29조 ,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20조 , 제34조

4. 이유

-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로 분할·설립되기 전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아래에서는 '원고'라 쓴다)가 1993. 11. 17. 공유수면매립법(아래에서는 '매립법'이라 쓴다) 제29조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정항만인 삼천포항의 항만구역 내에 있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83 전면 해상에 삼천포화력발전소(5, 6호기) 연료저탄장 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전면 해상 182,460㎡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을 함
- 경상남도지사는 1994. 2. 19.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그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축조되는 접속호안(240m) 및 그 배후의 폭 10m 이상의 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10만t급 안벽 400m) 및 그 배후의 폭 25m 이상의 에프론(공공)부지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를 받고, 같은 해 7. 19. 원고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붙여 위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함
- 원고는 1994. 9. 28.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그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수하여 1997. 8. 7. 발전소 연료저탄장 부지와 거기에 접한 연료 하역부두인 이 사건 항만시설의 축조공사를 완료함

- 경상남도지사는 1998. 2. 26. 총매립면적 171,534㎡ 중 저탄장인 위 덕호리 900-11 장 130,530㎡, 같은 리 900-13 장 15,213㎡, 하역시설인 같은 리 900-15 장 7,469㎡ 등 토지 3필지 153,212㎡를 원고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및 그 부지인 같은 리 900-16 장 9,153㎡를 국가에, 도로인 같은 리 900-14 도로 6,456㎡, 같은 리 900-12 도로 2,713㎡를 고성군에 귀속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 등의 유지보수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그 매립공사의 준공을 인가함
-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귀속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1998. 5. 20.과 같은 해 6.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항만법 제17조, 그 시행령 제19조를 들어 이 사건 항만시설에 투입된 사업비 29,689,522,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은 항만법상의 허가가 아닌 매립법상의 매립승인에 의하여 시공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항만법 제17조에서 정한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함
-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인 원고가 항만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매립법에 의한 경상남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하여 그 승인 및 인가 당시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부가된 조건(부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임
- 이 사건 항만시설의 국가로의 소유권 귀속 경위 등이 위와 같은 이상, 비록 그 공유수면매립승인 당시 해운항만청장이 조건부 동의를 하거나 그 인가 당시 경상남도지사가 조건을 부가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조건부 동의 등 때문에 그 동의 등을 항만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그 동의 등이 이 사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나아가, 항만법에는 이에 의한 허가로 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등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 매립법에는 이에 의한 매립면허 등으로 항만법에 의한 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사업비 상당액만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비하여, 매립법은 사업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추진을 이들 법 중 어느 것에 기하여 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비 보전방법 및 내용, 절차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
- 특히 공유수면매립승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우처럼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비 보전의 개념을 떠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매립지 중에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

립지를 제외한 부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가 항만법상의 허가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을 시공하였다면 항만법 제1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의 일부인 안벽으로부터 200m 내지 300m 내에 있는 항만배후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수면매립승인 및 인가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보다 훨씬 더 많은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점,

- 사업시행자가 항만법 허가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할 경우 그 허가권자가 항만법 등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해당 공사의 관리, 감독은 물론 앞으로 무상사용대상이 될 항만시설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의 확인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매립법의 승인 등에 의하여 항만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점,
- 원고는 삼천포화력발전소(5, 6호기) 연료저탄장 부지 조성을 주목적으로 매립법에 의하여 그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준공 후 그 연료저탄장 부지 등으로 총매립면적의 89% 정도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다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으로부터 어떤 공용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등 대가 없이 취득하더라도 그에게 반드시 이를 무상사용하게 할 부담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기 사항을 함께 고려하면 매립법상의 매립승인만을 받은 원고에게 그 매립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게 하는 외에 이 사건 항만시설까지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음
-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허가에 의한 항만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그 허가에 의한 공사시행자에게 허용되는 그 법 제17조, 그 법 시행령 제19조의 무상사용허가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는 매립법령,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부관의 한계와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관련 대법원판결 취지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음
-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피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시가 요건이 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음

포항신항만시설 무상사용권 확인

사건	대법원 99두10148	허가신청 거부	2001. 9. 4.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지방해양수산청	
결과 : 기각			

1. 판시사항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당해 항만

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외에 '건설이자'가 포함됨[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여기서의 건설이자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이라고 볼 것이고,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간도과에 관하여 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비관리청인 항만공사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산입되는 건설이자는 그 금액과 발생기간, 발생사유가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지, 사업기간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3. 참조조문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공2001하, 2094)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확인

사건	대법원 2000두8745	허가신청 거부	2001. 8. 21.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지방해양수산청	
결과 : 기각			

1. 판시사항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판결요지
   -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가능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그 건설이자를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실제 소요비용보다 과다 산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임

3. 참조조문
   -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구 항만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6호

투자비 보전

사건번호	행정심판 2014-12330	구분	투자비보전
사건명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심판일	2015. 3. 10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대한민국	
결과 : 기각			

1. 기초사실
   - 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투자비보전 대상도 아니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고, 청구인도 허가조건에 이의가 없다는 회신을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준설공사로 항로 및 정박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항만법」 상의 국가 귀속시설이므로 투자비 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거부 회신

2. 청구인 주장
   -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항로·정박지 등의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항로·정박지 등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의미(「항만법」 제2조제5조)하므로 준설지는 준공과 동시에 항만시설이 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투자비 보전 신청 거부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함
   - 이 공사의 허가조건 제4호에는 국가 비귀속 및 투자비 비보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 귀속여부나 투자비 보전여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의견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준설지의 국가 귀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면서 국가 비귀속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취소가 당연함

3. 피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에서 준설공사를 시행한 수역은 비관리청 전용부두의 전면수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수역시설이 아님
   - 청구인은 이 사건 준설지에 대하여 투자비 보전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준설지는 항만시설의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건설 중인 부두 인근의 저수심 지역을 깊게 준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준설한 후 투자비보전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을 조건으로 한 시행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응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은 적법·타당함

4. 판단
   - 기각

□ 관계법령

- 구 항만법(2014. 3. 24. 법률 제1254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91조
- 구 항만법 시행령(2014. 4. 8. 대통령령 제2529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2항, 제92조제1항, 별표 1, 별표 2
- 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2014. 6. 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투자비 보전

사건번호	행정심판 2007-08052	구분	투자비보전
사건명	비관리청시행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사업비보전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심판일	2008. 10.21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대한민국	
결과 : 기각			

1. 기초사실
   - 비관리청은 구「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
     · 승인 당시 항로 및 선회장과 박지의 장래 유지준설은 피승인자가 시행하기로 하는 특칙을 두었음
   - 비관리청은 항로 확장고시를 요청하였고, 항만관리청은 이 사건 항로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에 항로의 유지·보수의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에 대한 투자비 보전은 불가 통지

2. 청구인 주장
   - 전원개발법에 따라 장래 유지준설은 피승인자 시행이었으나 1998. 11. 26. 이 사건 항로가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이상 그 때부터 국가에 귀속되었고, 「항만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로의 유지준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임
   - 청구인은 이 사건 항로에 2003년에도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항로를 국가에 하고 유지준설 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를 보전해 주었는바, 사업비 비보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남

3. 피청구인의 주장
   - 전원개발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항로 및 선화장과 박지의 장래 유지·준설은 피승인자가 시행한다'는 특칙을 두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항로가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되었다고 하여 「항만법」의 적용을 사업비 보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특칙이 그대로 적용됨
   - 설령 이 사건 항로가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항로는 「항만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비 보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2003년 사업비 보전은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착오로 처분된 것으로 보전된 사업비 회수 예정임

4. 판단
- 기각

□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 구 항만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7조
- 구 항만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구 항만법 시행규칙(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구 공유수면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13두3900 원심 : 2011누2087(광주고등법원)	허가신청 거부	2014. 8. 28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지방해양수산청	
결과 : 원심파기			

1.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 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는 그 허가 기준에 관한 규 정이 없음
   - 개정 전 항만법이 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신설됨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은 개정 전 항만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2008.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도입한 것임
   - 항만법은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에 따른 요건으로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 즉 항만기본계획[(가)목],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나)목],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다)목]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 그 후 항만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면서(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9조 제3항에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의 요건이 추가되었음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이 이와 같다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그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원고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
- 원심의 판단에는 구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3. 판단

- 원심파기

□ 관계법령

- 항만법(구) 제9조 제2항, 제3항, 제51조 제1항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법 2011누2087	허가신청 거부	2013. 1. 24.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지방해양수산청	
결과 : 기각			

1. 기초사실
   - 원고는 목포신항만에서 선박메가블럭 및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원고는 '플랜트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만관리청은 이를 승인하였음
   - 그에 따라 원고는 부두운영사와 항만부지 사용계약과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하고, 원고와 피고, 지방자치단체, 부두운영사는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부지에 선박블럭,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기 위한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

- 거부이유 -

   - 사업 구역 내 공사지역 인근은 항만 기본계획상 자동차부두로 2011년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지와 약 600m 떨어져 있는 신항 재정부두는 수출자동차를 취급으로 항만 운영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 주장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가속행위성
   - 항만법상 허용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재량권 일탈·남용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3. 인정사실
   - 항만이용현황
   - 화주 민원제기
   - 분진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의 개최 등
   - 원고가 마련한 분진피해 예방대책안
   - 해당 부두 및 타항의 분진피해 사례 등
   - 해당 항만 항만기본 계획

4. 판단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임
  - · 위 조항 각 호에서 들고 있는 허가요건 또한 구체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가 피고의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 여부 심사과정에서 분진 피해를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 위 관련 법령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포신항만(주)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및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목포신항만(주)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 · 위 사업 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목포신항만(주)로 하여금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시 인정받은 사업이 아닌 '플랜트화물 조립·처리를 위한 크레인 설치부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항만부지에서 사상·용접·도장 작업 등 대형구조물을 대조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점
  -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 승인조건으로 시설물 설치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청인 피고 및 관계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 항만법 제1조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 제9조 제2, 3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신청서에 '공사의 목적(제3호)'과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제4호)'을 적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항만법의 입법취지 및 허가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시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의 설치 목적, 그 규모 및 트랜스퍼크레인을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작업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대학교수외인 교수팀에 의뢰하여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서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하여 하고자 하는 작업은 용접, 사상, 도장작업을 수반하여 금속 및 페인트분진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작업 도중 발생한 금속 및 페인트분진이 바람에 날려가 인근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함

· 원고가 수립한 분진피해 예방대책이 분진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광양항 부두에서 선박블럭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 및 페인트분진이 인접한 선적장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수출용 자동차의 표면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분진피해 우려가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기아자동차는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서 대형 철구조물 및 선박블럭 제조 사업을 할 경우 자동차 수출 선적항을 이전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2006. 12. 27. 수립된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그 후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항만부지에 연접하여 자동차부두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착공되어 2015년경 완공 예정으로 있는 점, 목포신항만 물동량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03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수출 선적항이 이전될 경우에 목포신항만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두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사일로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석탄부두 역시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형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원고가 하고자 하는 작업과 작업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항만공사를 불허하는 것이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항만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항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피고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임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항만관리청이 부두운영사가 요청한 '플랜트화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고, 피고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을 승인하더라도 항만의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

· 피고가 원고 등과 원고의 사업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됨

·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관리청이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항만공사를 허가할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두운영사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치고,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동차부두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위 사업 승인은 부두운영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항만부지에 플랜트화물 처리를 위한 크레인 설치부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를 상대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 승인시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점

② 피고의 위 검토 의견 역시 항만관리청에게 부두운영사로 하여금 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을 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 제출한 내부적 의견에 불과한 점

③ 투자협약 또한 피고가 원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두운영사와 함께 원고의 성공적 투

자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항만공사를 허가해 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따라서 위와 같은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관계법령 - 항만법 제1조, 제9조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	서울고법 2013나2001653	부당이익금 반환	2013. 10. 18선고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 대한민국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항만관리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연차별 화물유치계획량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2012. 1. 19.경 원고에게 다시금 공문을 보내어 위와 같은 감사사항을 적시하며 당초 이 사건 선정계획에 의거하여 원고의 연차별 화물유치계획량 중 미이행 비율에 상응하는 이행보증금 주3) 1,061,529,810원을 정산하고자 하므로 그 납부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원고는 2009. 11. 2.자로 원·피고 간 합의에 따라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을 파기하고 이행보증금을 정산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피고는 국토해양부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기에 이행보증금을 정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 원고는 2012. 2. 3.자 공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의 약정 파기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부득이 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해서 ○○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보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이므로, 기존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신 그 전액을 고지서 발급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7.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1,061,529,81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당초 원고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음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상에 이 사건 선정계획 등에 기초한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하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라 한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의 근거 자체가 없음
-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2009. 8. 12.자 이행보

증금 정산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2009. 10. 30.자 공문을 통해 화물유치계획의 연차별 이행종료기한을 2013. 7. 31.까지 연장하여 동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화물유치실적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즉시 정산청구권을 포기하였음

-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의사가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즉시 정산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2009. 11. 2.자 공문을 통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날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이 체결된 바 없어 여전히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상의 위약금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행보증금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원고의 신규화물유치계획량의 미달성은 전적으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화물선 출입에 필요한 계획 수심 확보, 양곡화물만을 위한 TOC 부두 선적 야적장 전용사용권 및 야적장 공간 확보 등)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단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할지라도, 피고의 귀책사유의 정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약정된 이행보증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원고는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1,061,529,810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바임
  - 한편, 원고가 비록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부과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변제 거절로 인하여 입게 되는 사실상의 손해(신용도 하락 등)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이행보증금 지급을 비채변제로 보아 원고가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음

3. 피고의 주장

-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은 국가계약법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효하므로 피고가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로

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가 2009. 10. 30.자 공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즉시 정산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
-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고, 설령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는 없음

4. 판단

-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
- 한편,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설사 국가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이 국가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의 경우 모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변경하는 경우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금 임대차기간 연장을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수차례에 걸쳐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문 등을 주고받은 다음 명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

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 그러므로, 다음의 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과 관련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선정계획에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화물확보물량, 신규화물유치계획, 항만현대화 기여도를 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이행보증금은 선정업체가 정해진 이행기간 내 위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비율만큼 국고에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보증금의 납부금액과 이행기한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정해 두고 있음
  - · 피고는 이 사건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부두운영을 원하는 회사로 하여금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 납부확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의 양식으로서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제출하겠으며, 만일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아니한 비율만큼 당해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이행보증금 납부서 양식들을 위 선정계획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음
  - · 원고는 위와 같은 선정계획 상의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위 각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
- 이 사건 선정계획 상의 이행보증금 납부규정 등에 따라 원고가 사업제안 당시 약정한 신규화물 확보계획물량 610,000톤 및 부두운영시설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서 657,088,000원을 유가증권 형태로 피고에게 납부함
- 따라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은 국가계약법 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의 근거 자체가 없음

5.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